

| |
|----------------------|
| 발간등록번호 |
| 11-1543000-004787-01 |

국내·외 동물복지 관련 정책·제도
조사 및 조직·기능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2024. 10.

한국정책학회

<목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
| 3. 기대 효과 | 3 |
| II. 주요국별 동물복지 관련 정책·제도 및 조직 현황 조사·분석 | 4 |
| 1. 독일 | 4 |
| 2. 영국 | 17 |
| 3. 미국 | 30 |
| 4. 일본 | 40 |
| 5. 소결 | 50 |
| III. 동물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기능 효율화 방안 | 57 |
| 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정책 | 57 |
| 2. 각국의 반려동물 조직 및 기능 간의 비교를 통한 조직 기능 효율화 방안 도출 | 75 |
| IV. 결론 | 84 |

<표 목차>

| | |
|---------------------------------------------|----|
| <표 1> 인력 현황 | 61 |
| <표 2> 예산 현황 | 61 |
| <표 3> 대상동물 유형별 동물보호·복지계획 및 감독 기능 추진체계 | 62 |
| <표 4> 대상동물유형별 동물보호 및 관리 기능 추진체계 | 62 |
| <표 5> 대상동물유형별 동물영업 관리 기능 추진체계 | 63 |
| <표 6> 동물복지 관련 조례의 주요 조항 구분 | 65 |
| <표 7> 동물복지 관련 지자체 담당부서(조례 규정상) | 65 |
| <표 8> 기타 규정 | 73 |

| | |
|-----------------------------------------|----|
| <표 9> 우리나라와 주요국 동물복지정책 조직 및 기능 비교 | 76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독일의 반려동물 현황 | 5 |
| <그림 2 > 반려동물 유형에 따른 사료 시장 현황 | 7 |
| <그림 2> 반려동물 유형에 따른 사료 시장 현황 | 7 |
| <그림 3> BMEL 조직도 | 13 |
| <그림 4> BVL 조직도 | 14 |
| <그림 5> 개보유세 납세 표식 | 15 |
| <그림 6> 베를린 티어하임 전경 | 16 |
| <그림 7> 영국의 반려동물 현황 | 18 |
| <그림 8> <2005~2022년 영국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지출액>(단위: £ 백만) | 20 |
| <그림 9> 영국의 최신 반려견 서비스(좌측: 버터넛박스 서비스, 우측: 펠카나 모바일 앱) | 21 |
| <그림 10> DEFRA GROUP 조직도 | 25 |
| <그림 11> DEFRA에서 제정한 개별 동물의 복지를 위한 실무규정 | 26 |
| <그림 12> 맹견법 담당조직을 위한 지침서 | 27 |
| <그림 13> APHA의 전략체계도 | 28 |
| <그림 14> 미국의 반려동물 보유 현황 | 31 |
| <그림 15> 미국 반려동물 시장 소매 채널 비교 | 33 |
| <그림 16> 미국의 보험 가입 반려동물 규모 변화 추이 | 34 |
| <그림 17> USDA 조직도 | 37 |
| <그림 18> ASPCA는 뉴욕경찰의 협력 체계 홍보 내용 | 39 |
| <그림 19> 반려동물 산업시장 규모 | 43 |
| <그림 20> 일본 환경성 조직도 | 48 |
| <그림 2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 60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빠르게 전환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약 25.4%로 약 602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반려동물 중 반려견의 비율은 약 75.6%이며, 반려묘의 비율은 약 27.7%를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림축산식품부 조사)동물보호법에 대한 명칭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은 71.8%이며, 유기 및 유실된 동물의 입양 의향도 84.4%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들의 복지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2022년 동물복지 강화 방안(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행정 니즈에 발맞추고 우리의 동물복지 정책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복지 전담 조직의 기능 중심의 효율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정책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나(농림축산식품부, 2017),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동물복지, 특히 반려동물 복지 전

담 조직의 기능차원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는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을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해 왔으나 최근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시의성과 연구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전체 동물을 대상으로 복지 수요의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하여 조직 기능 차원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주요국별 동물복지 관련 정책·제도 및 조직 현황 조사·분석

- 주요국별 동물복지 관련 정책·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주요국별 동물복지 관련 조직 현황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동물복지 관련 조직·기능 개선 방안 도출

- 우리나라 동물복지(동물보호, 반려산업의료 포함. 이하 같음) 관련 정책·제도 및 조직 현황 조사
 - 우리나라 동물복지 관련 정책·제도 현황 및 향후 전망
 - 중앙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 관련 조직 현황
- 중앙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 관련 조직·기능 개선사항 및 모델 제시
- 동물복지 관련 전담기관(공공기관 등) 신설 필요성 및 거버넌스 모델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 국내외 동물복지 관련 정책, 법령, 제도 및 기존의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
- 특히 기능효율화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조직의 기능 및 협력체계에 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함

— 전문가 인터뷰

- 조직 기능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조직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여 효율화 방안을 위한 방향 도출하고자 함

3. 기대 효과

○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

— 동물복지에 관한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동물 복지의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동물복지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 증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의 집행에 있어 국내 상황에 적절한 최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 증대를 추구할 수 있음

○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강화

— 현재 동물복지 관련 조직과 기능의 분산 및 비효율적 운영을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파악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편 방안을 모색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음

○ 사회적 요구와 책임에 대한 대응

— 국민들의 동물복지,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과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II. 주요국별 동물복지 관련 정책·제도 및 조직 현황 조사·분석

1. 독일

1) 개요

□ 독일의 반려동물 현황

○ 독일의 반려동물의 수는 약 3,430만 마리로 확인됨

— 독일의 컨설팅사 스키포스(Skopos)와 독일 반려동물 용품 산업 협회(Industrieverband Heimtierbedarf, 이하 IVH), 독일중앙애완동물 상점 협회(Zentralverband Zoologischer Fachbetriebe Deutschlands, 이하 ZZF)가 온라인 설문 결과, 총 3,430만 반려동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함

— 반려동물로는 개, 고양이, 작은 포유동물, 애완용 새, 관상어와 테라리움 동물 등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남(Statista, 2023)

— 독일 전체 가구의 45%가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는 최소 2종 이상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확인됨(IVH, 2023; Statista, 2023)

— 가구 구성에 따라 2인 가구는 35%, 3인 이상 가구는 36%, 1인 가구는 29%로 나타났음(IVH,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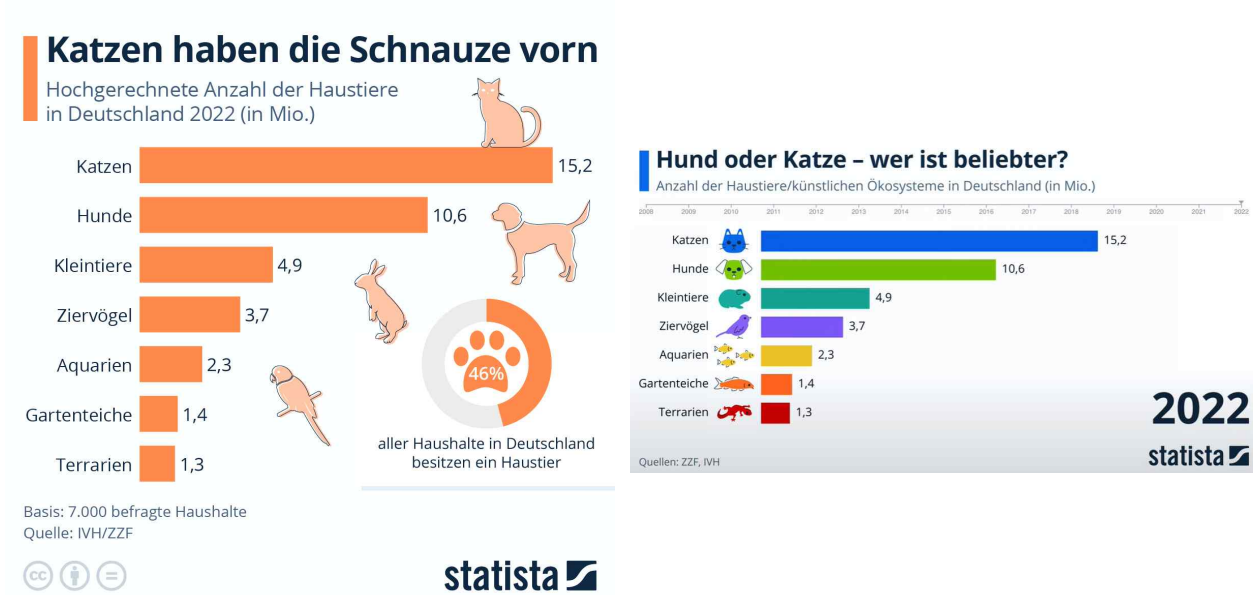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소유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39세(19%), 40~49세(18%), 50~59세(22%)으로 확인되어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29세 이하 반려동물 주인의 비율은 16%, 60세 이상 반려동물 주인의 비율은 25%로 확인됨(IVH, 2023)

— 유형에 따른 개체 수는 고양이는 1,570만 마리, 개가 1,050만 마리, 토끼와 이외 기니피그, 햄스터, 생쥐 등 460만 마리, 애완용 새 350만 마리 등으로 확인됨(Statista, 2023).

— 고양이는 반려가구 전체 가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양이가 개와 달리 별도의 세금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는 전체 가구의 21%, 토끼와 이외 기니피그, 햄스터, 생쥐 등 5%, 애완용 새 3%, 수족관 수는 4%가, 관상어가 있는 정원 연못이 3%, 테라리움이 전체 가구의 2%로 나타났음(DA direkt, 2023; Statista, 2023)



<출처>

<https://de.statista.com/infografik/18926/die-haeufigsten-haustiere-in-deutschland/>

<출처>

<https://de.statista.com/infografik/31396/anzahl-der-haustier-e-in-deutschen-haushalten-nach-tierarten/>

<그림 1> 독일의 반려동물 현황

○ 반려동물 생애 동안에 지출하는 비용은 입양비, 양육비, 장례비, 보험 및 의료서비스 지출 비용으로 구분됨

— (입양비) PeTA(2024)의 조사 결과, 입양비는 브리더를 통한 입양(약 2000 유로)을 제외하고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할 경우 보호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 비용은 대부분 거세, 예방접종 마이크로칩 삽입 등 동물보호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 비용은 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400유로, 고양이의 경우 70~150유로, 소형 동물의 경우 20~40유로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비) 독일 동물복지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는 반려동물이나 양육자에 따라 다르지만 개의 경우 한 달에 90~100유로, 고양이는 약 60~80유로 정도 비용이 발생함

— 독일에서 개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개 보유세(도시에 따라 연간 60~120유로)를 납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개 책임 보험(연간 40~70유로)도 납부해야 함(Mein-haustier, 2024)

- 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이 부과됨(국민일보, 2021)
- (장례비) 독일에서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매장과 화장에 따라 다른데 반려동물 묘지에 매장하는 비용은 약 100~300유로로 무덤을 임대하면 연간 비용이 발생함
- 화장 비용은 화장 유형과 동물의 크기에 따라 약 70~355유로가 필요함
- 수의사의 경우 동물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체처리 시설에 20유로를 내고 처리해야 함(Mein-haustier, 2024)
- (보험 및 의료 서비스)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 보험은 건강보험과 책임보험으로 구분되는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등에서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용은 한달 기준 약 5유로 나타남(베이비타임즈, 2024; All About Berlin, 2024)
- Norstat와 CHECK24(2023)의 조사결과, 반려동물의 보험 가입률은 개는 89%, 고양이는 31%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책임보험 제도 여부에 따라 연방주간 가입 비율의 차이가 약 8% 차이가 남(CHECK24, 2023)
- 건강보험의 경우 반려견의 나이, 유형,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0유로 정도 비용이 발생함(All About Berlin, 2024)

□ 독일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 독일의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IVH, 2023)

- IVH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반려동물 산업 매출은 2023년에 약 71억 유로에 달함
-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구류 전문기업과 식품 소매업체는 56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9.5% 성장하였고 온라인 거래에서도 13억, 야생조류 먹이 판매로 1억 6,100만 유로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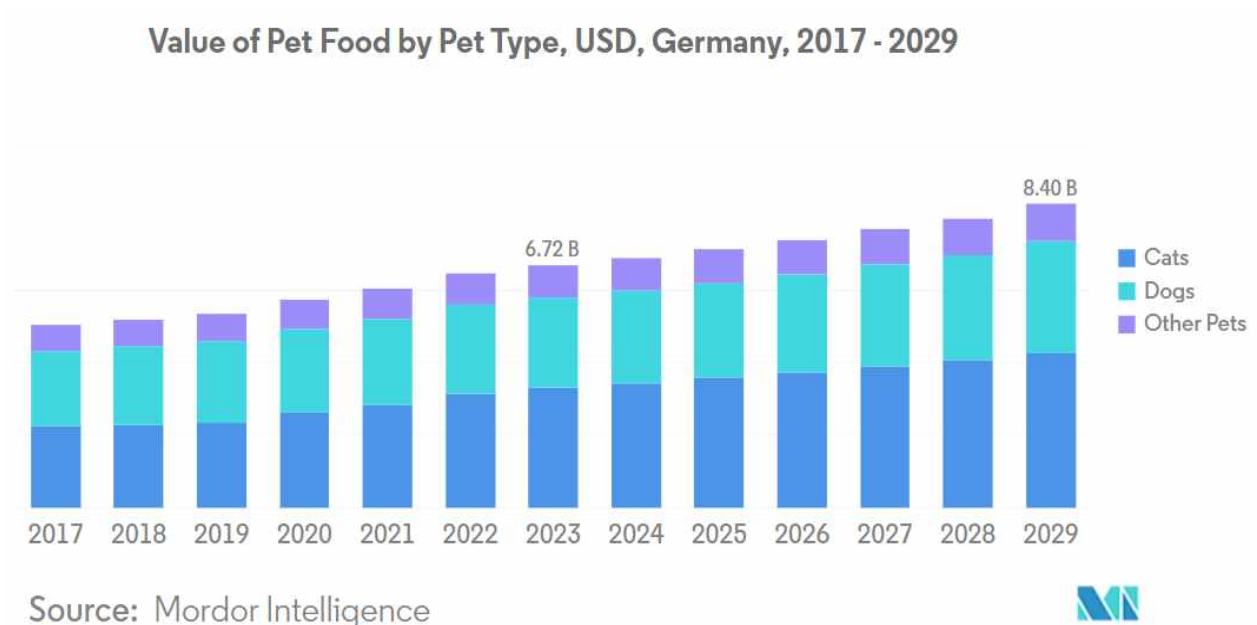
○ 독일의 반려동물 사료시장

- 독일의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5억 유로로 2024년에는 69억 1천만 달러, 2029년에는 84억 달러로 추산되며, 예측 기간(2024~2029년) 동안 연평균 3.9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반려동물의 사료 매출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에너지, 원자재 포장비용, 운송비용의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음(IVH, 2023; Modor Intelligence, 2024)

- 최근 반려동물 사료 구매자들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선

호하며 일부는 할인 캠페인이나 구독 서비스를 활용해 반려동물에게 고품질 사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IVH, 2023; Mod orIntelligence, 2024)

— 반려동물 유형별로 사료에 대한 매출을 살펴보면 고양이, 개, 이외 동물 순으로 나타났고 고양이 사료는 작년 대비 14.4% 증가한 23억 유로, 개 사료는 9.1% 증가한 20억 유로 매출을 기록함(IVH, 2023)



<출처>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de/industry-reports/germany-pet-food-market>

<그림 2 > 반려동물 유형에 따른 사료 시장 현황

○ 독일 반려동물 소비재 시장

— Statista(2024)에 따르면 독일 반려동물 용품 판매는 2023년에 56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온라인 매출은 약 13억 유로에 달함

- 오프라인 전문점과 소매업체는 2023년에 5억 유로가 증가했고, 매출은 56억 유로로 나타남

— 소비재 액세서리 매출은 2023년 고정 소매 부문에서 총 매출이 작년 대비 2.7% 증가한 약 11억 유로를 기록함

- 세부적으로 고양이 액세서리 매출은 2억 4,100만 유로(+7.3%)로 증가하였고, 소형 동물(9,600만 유로, +3.5%)과 관상용 조류(약 3,000만 유로, +0.4%)가 증가하였으나 개 및 관상어용 액세서리 및 용품 매출은 하락함(IVH, 2023)

○ 독일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시장

- (기술) 독일의 2023년 반려동물 관련 전자상거래 수익은 14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TRADE, 2024)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그 예로 반려동물 구매과정에 대한 플랫폼(Honest Dog), 고양이의 식단관리 플랫폼(Better Cat), AI 기술을 활용해 좋은 사료를 평가해주는 플랫폼(CheckForPet) 등 다양한 반려동물 서비스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F6S, 2024)
- (건강관련 서비스)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집에서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felmo)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음(F6S, 2024)
 - 반려동물 건강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가젯과 GPS 추적 장치를 포함한 독일 애완동물 웨어러블 시장은 2023년에 19억 달러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TRADE, 2024)
- (보험 서비스) 독일 반려동물 보험시장 규모는 2023년에 7억 1,937만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2024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6.40%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베를린, 니더작센, 튀링겐,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을 포함한 일부 독일 주에서는 개 주인에게 책임 보험을 요구함에 따라 보험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책임 보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Market Analysis Report, 2024)

2) 독일의 반려동물 복지 현황

□ 독일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 독일은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독일은 대부분 보호소를 거쳐 반려동물을 입양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매매하는 것을 불법이며 전문 브리더를 통한 입양도 가능하나 약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함

- 보호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입양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무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최소 3번 이상이 방문 과정을 거쳐 반려동물과 친밀감을 높이는 과정 참여
 - 입양자의 거주환경과 돌봄(산책, 직장 등)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며 가족 구성원이 모든 동의가 있어야 함
 - 입양 후 보호소의 관계자가 입양자의 집에 3~4회 방문하여 반려견의 생활을 확인
-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한 후에 정식 입양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며, 서류 작성이 완료될 통해 입양 절차를 마무리 함(울산매일 UTV, 2024)
-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반려지식증명’이나 ‘반려견 면허’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함(경인일보, 2024)
- (등록) 독일의 반려견의 경우 등록번호를 내장칩 혹은 문신으로 표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임
- 반려견은 등록번호, 전염병 예방접종 정보, 혈액검사 결과를 기록한 공인 수의학 증명서(Tieraus Nicht-EU-Staat)를 발급받아야 하며 반려동물은 입양 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독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ID를 만들고 등록하도록 함
- 반려견 미등록 시 약 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국민일보, 2021; 경인일보, 2024; 울산매일 UTV, 2024)
- (사육) 독일은 반려견세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견세는 지방세로, 지역에 따라 납세 금액이 차이를 보임
- 각 주는 반려견세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두 마리 또는 그 이상의 개를 보유하고나 개의 특성이 위험할 경우 내야 하는 금액을 높게 책정함(이창규, 2020년)¹⁾
- 독일에서 독립된 가정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사육하는 것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아파트나 콘도미니엄 단지의 경우는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음
- 이웃에게 소음이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1) 이창규. (2020). 반려견세 도입을 위한 서론적 연구 -독일의 개보유세 현황과 게마인데를 기초로-.세무외회계연구 9(3): 339-375

- 특히 개의 경우 주 별로 다르지만 대중교통과 혼잡한 장소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해야 함
- 임대공간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할 때는 집주인의 조건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있음(중성화요구, 동물의 수, 투견 거부 등)(bussgeldkatalog, 2024)
- (시설)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 보호소인 티어하임 베를린 (Tierheim Berlin)을 살펴보면 160,000㎡ (약 축구장의 22배의 크기)로 유럽 내에서 최대의 규모와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개, 고양이, 새, 돼지, 양, 파충류까지 약 1,300마리의 동물들을 직원과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독일의 동물 보호법에 따라 강아지들 전용 면적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50cm 이하는 6㎡, 65cm 이하 8㎡, 그 이상은 10㎡로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개들의 사회성을 위해 서로 간 투명한 벽을 설치하는 등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를 제공해야 함
- 자연적인 환경을 위한 녹지와 호수 등 산책로가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네 번 이상 3시간 이상씩 방문하여 산책할 수 있음
- 한 달에 네 번 출석 이후에는 ‘동물 보호 세미나’를 수강해야 하며 수료 이후에 강아지와 산책하는 봉사를 할 수 있으며 유치원부터 현장 체험학습이나 방문교육을 통해 ‘동물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EBS뉴스, 2021)

○ 독일의 선진 수준의 반려동물 관련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다음의 한계를 지적받고 있음

- (유기보호)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유기 시 1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인방송, 2024) 독일 동물 복지협회에 따르면 동물보호소의 2/3가 영구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년 새로운 약 350,000마리가 1,400개 동물보호소에 수용되고 있음
- 이 중 240,000마리가 입양되고 있으며 개는 2~6개월, 고양이는 2~3개월 애완용 새는 최대 4주가 머물 수 있음(Deutschlandfunk, 2024)
- 동물보호소에서 필요한 재정은 인력, 동물치료, 건물 유지 및 관리, 에너지, 관리 및 사료 등으로 연간 200만 유로 이상 필요하며 고양이 중성화 비용이 최소 200유로, 암컷 개는 1,000유로가 필요함(Deutschlandfunk, 2024)
- 독일 내에서 국가 보호소가 아닌 니더작센의 스타데(Stade)와 볼프스부르크(Wolfsburg)와 같은 개인보호소도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총 비용의

1/3을 지원해 주고 있음

— 하지만 지원금액이 동물의 수가 아니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 인구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주택 수수료, 회비, 기부금 및 할인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함 (Deutschlandfunk, 2024)

— 유기동물 안락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함(경인 방송, 2024)

—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기소를 및 실제 신고가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음(한국법제연구원, 2010)

— 일례로 동물보호법 상 범죄수사 및 기소에 대한 사항에 대한 명시가 불명확하다는 점, 실제 기소에 따른 처벌 건수 또한 그 수가 적고,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점 또한 지적받고 있음(한국법제연구원, 2010)

□ 독일의 반려동물 복지 전담 조직

○ 연방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이하 BMEL)는 동물보호법 및 관련 규정의 시행과 관리를 총괄하는 연방부처로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복지 업무를 담당함(BMEL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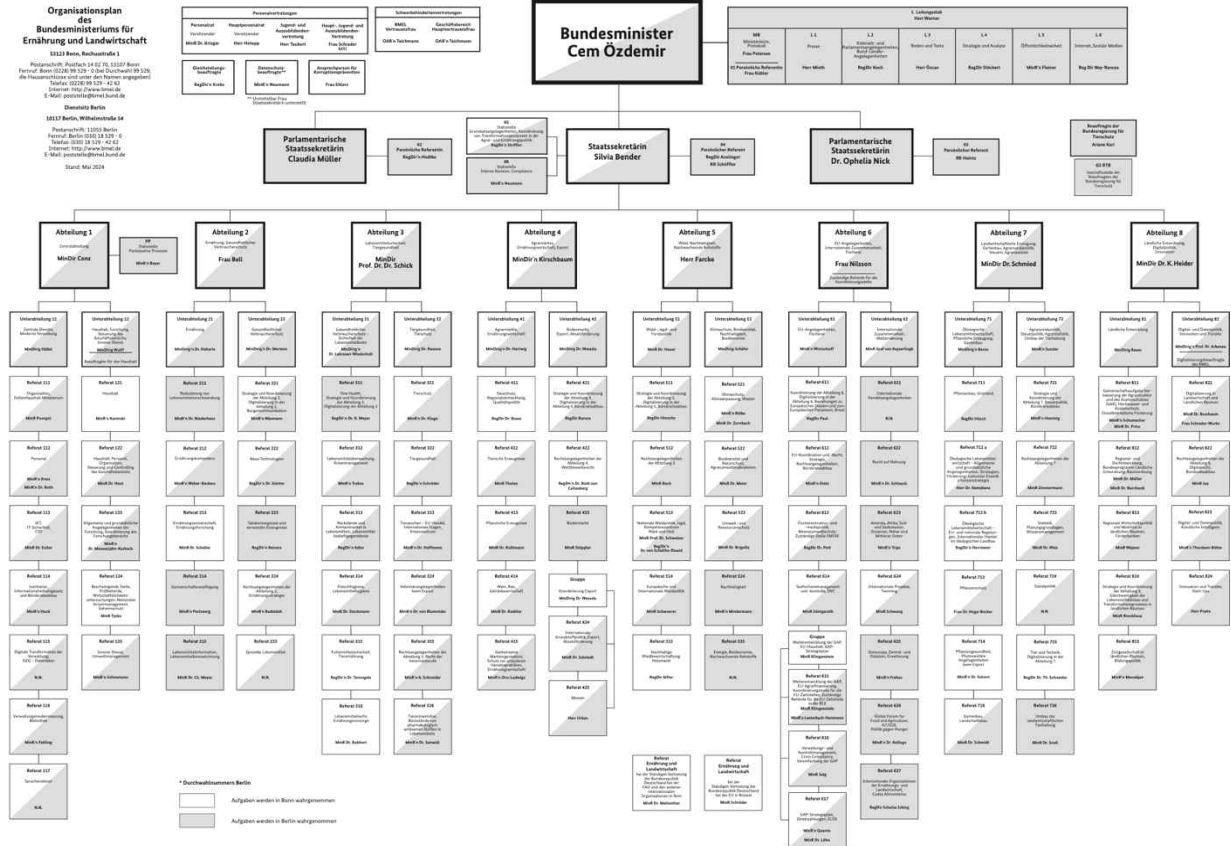
— BMEL은 식품 안전 및 인증, 지속가능한 생산(농업, 어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 연방주도 농촌개발, 농업 발전, 동물복지 등의 업무를 총괄

— 독일의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1972년 제정)」은 연방식품농업부에 다음의 관한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할 권한을 부여(제2a조 제1항)함

- 동물의 운동 및 사회적 요구: 동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사회적 필요에 대한 보장
- 동물 수용 시설: 동물이 머무는 방, 케이지, 기타 시설 및 먹이, 물 공급 장치에 관한 요구 사항
- 조명 및 공간의 기후: 동물이 수용되는 장소에서 적절한 조명 및 환경 조건 유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관리 및 감독: 동물의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 및 보관, 필요 시 관련 당국에 대한 제출 의무
- 동물 관리자의 자격: 동물을 관리하는 자의 필요 지식과 능력, 이에 대해 증명
- 안전대비: 기술적 결함이나 화재 발생에 대한 대비책 마련

- 동물보호법은 BMEL은 동물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의하여 동물의 교육, 교육 또는 훈련에 관한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요건 제정(제2a조제1a항, 연방하원의 동의 필요), 개와 고양이의 식별 표시 방법(예시: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와 등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정(제2a조제1b항), 동물의 운송 규제 규정 제정(제2a조제2항, 연방교통및디지털인프라부(현 연방디지털교통부)와의 협의와 연방위원회의 승인 필요) 권한을 가짐
- 이 외에도 BMEL의 주요기능으로 동물복지 법률 및 정책 개발(제16조, 제16a조), 국가 차원의 법률 시행 감독(제18조), 주 정부와의 협력(제16조, 제16a조), 연구 및 교육 지원(제2조, 제18조)등이 있음
- 이에 따라 BMEL은 법적 규정인 반려견보호규정(Tierschutz-Hundeverordnung)을 정하고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및 필요시 법률적 조치를 취함
- BMEL에서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3국로 해당 부서는 식품안전과 동물건강(Lebensmittelsicherheit, Tiergesundheit)을 담당함
- 제3국의 하위부서는 식품안전(건강, 소비자 보호-식품안전공급망)을 관장하는 하위부서 31과 동물건강, 동물보호를 관장하는 하위부서32로 구분됨
-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위부서32는 동물보호, 동물건강, 동물질병, 수출 관련 수의 문제, 수의사 관련 법령, 동물 약품, 식품 내 약물 잔류물 등을 관리함
- 하위부서31은 동물복지 전담조직은 아니지만 조직 일부에서 사료 안전 및 동물 영양을 담당하고 있음

Organisationspla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51123 Bonn, Beuelstraße 1
 Postfach 10, Postfach 14 42 12, 51127 Bonn
 Federal Bonn 51123 Bonn 51123 Bonn
 die Hausnummerierung ist nicht auf dem System integriert
 Telefon 0228 98 529 - 41 0
 Telefax 0228 98 529 - 41 3
 E-Mail: postamt@bmel.bund.de
 Düsseldorf, Berlin
 51127 Berlin, Wilhelmstraße 14
 Postfach 10, 11015 Berlin
 Federal Berlin 11015 Berlin 11015 Berlin
 die Hausnummerierung ist nicht auf dem System integriert
 Telefon 030 24 124 - 41 0
 Telefax 030 24 124 - 41 3
 E-Mail: postamt@bmel.bund.de
 Stand: Mai 2024



출처: https://www.bmel.de/SharedDocs/Downloads/DE/_Ministerium/Organisationspla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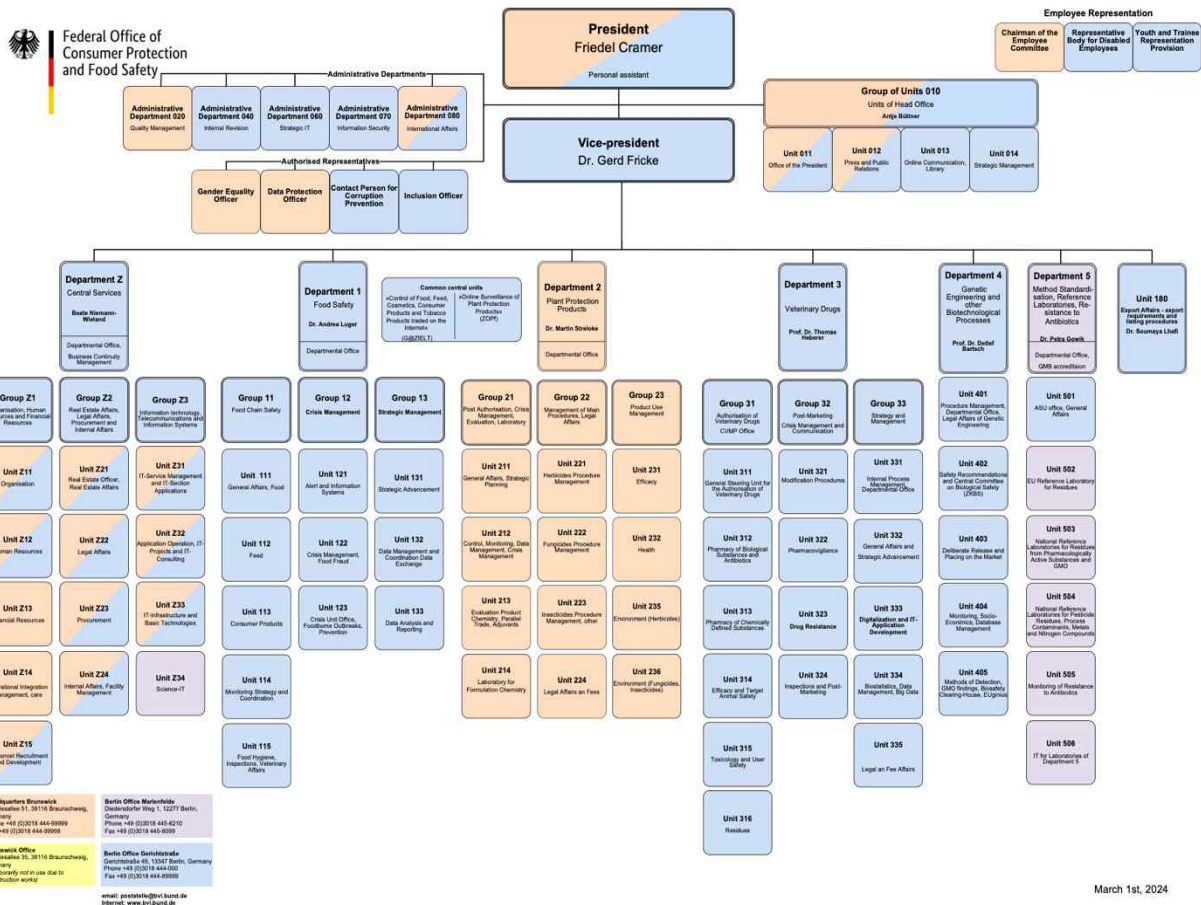
<그림 3> BMEL 조직도

○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이하 BVL)은 2002년 5월 설립된 BMEL 산하의 행정청으로 식품, 사료, 식물보호, 동물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송혜진, 2019)

— BVL은 식품안전(제1부), 농약(제2부), 동물의약품(제3부), 유전자 기술 및 기타 생명공학절차(제4부), 방법 표준화, 참조 실험실, 항생제 저항성(제5부), 수출문제(180유닛)등을 다룸

— 동물건강과 관련하여 사료, 동물의약품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평가, 승인, 허가, 위반 사항에 대한 권고 및 보고와 데이터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짐(BVL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동물의약품은 제3부(동물의약품)에서 사료는 제1부(식품안전)하위부서11(식품안전, 식품 접촉 물질의 보안) 112유닛(사료)에서 담당



March 1st, 2024

출처: https://www.bvl.bund.de/SharedDocs/Downloads/08_Bundesamt/04_Organigramm_BVL/Organigramm.pdf?jsessionid=080697A3AAABFF9166E4816655F78857.internet992?__blob=publicationFile&v=33

<그림 4> BVL 조직도

○ 연방 주 정부는 지역의 동물보호소, 수의사협회, 경찰과 협력하여 동물보호법과 반려견보호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복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나 집행 방법에 한해 주법을 통해 규정함

— 독일은 주정부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외형상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주정부의 입법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기본법 상에서 연방정부가 제정한 법의 집행을 주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음(기본법 제83조)

— 동물복지를 비롯한 동물보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입법권이 경합 영역에 속하나 연방 1958년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경합적인 입법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입법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실제로 정책에 대한 수립은 연방정부에서 이루

어지며 주정부에서는 집행을 위한 실제적 내용만을 한정적으로 주법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음(지방의회발전연구원, 1998)

- 동물보호법,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 및 동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의 법령과 관련하여 주법에 따른 관할관청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
- 주정부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정책이 반려견의 등록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려견의 등록은 연방 주 정부의 업무로 절차는 연방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만일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시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독일은 반려견의 보유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며, 이를 개보유세(Hundesteuer)라 하며 이는 지방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납세 금액에 차이가 있음
- 납세하였다면 각 주 정부는 고유의 표식을 부여하며, 소유자는 이 표식을 반려견의 목에 부착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이행여부를 표시함
- 반려견세는 반려견의 배설물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비용, 반려견 보호소 등의 반려견 관련 시설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는 등 일종의 목적세의 성격을 지님



출처: 에센시 홈페이지, 이창규(2020) 재인용

<그림 5> 개보유세 납세 표식

□ 비정부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

○ 독일의 주요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활동

— 독일은 독일동물보호연맹(Deutscher Tierschutzbund), PETA Deutschland, Vier Pfoten, TASSO, 동물 학대 반대 연맹(Bund gegen Missbrauch der Tiere, BMT) 등의 비영리단체들이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모이는 단체는 독일동물보호연맹으로 740개의 동물보호단체와, 550곳의 동물보호소가 연합을 구성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80만명 이상임

○ 정부와의 협력 현황

— 비영리 단체는 대체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통한 협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예시는 독일동물보호연맹이 운영하는 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으로 티어하임은 시민들의 기부와 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기관을 운영함

— 가장 대표적인 티어하임은 베를린에 위치한 시설로 시설의 크기는 약 축구장 22배 정도되는 크기로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



출처: 베를린 티어하임 홈페이지

https://tierschutz-berlin.de/Tierheim/gelaende/?gad_source=1&gclid=Cj0KCQjw8-2BhCHARisAF_w1gxKUQtY0kHZ7Kod9DnQMEJLm91UHQal9PB2VFDap8fIIXah1xhJEcaArpuEALw_wcB

<그림 6> 베를린 티어하임 전경

— TASSO는 자체적인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유실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데이터를 지방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유실된 동물이 다시 소유자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함

— 데이터의 제공은 개인정보보호조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에 관련 법률의 범위 안

에서 정부제공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 및 당국에만 전송될 수 있음

— 데이터 전송의 의무 또는 적법성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음(TASSO 홈페이지)²⁾

- 정리하면, 독일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은 연방부처인 BMEL에서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과 관련된 사안은 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더불어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함께 보호소 운영 등에 관한 사안과 관련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TASSO와 같은 동물보호단체와는 반려견 등록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유기 동물의 귀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영국

1) 개요

□ 영국의 반려동물 현황

○ 영국의 반려동물 양육현황

— (반려가구 현황) 2024년 UK Pet Food에 따르면 총 가구(1,620만 가구) 중 약 57%가 3,8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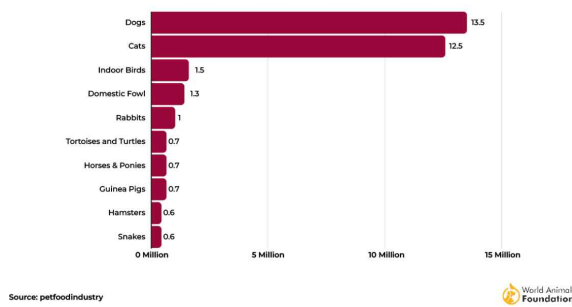
- 반려동물의 수는 2022년 3,500만 마리에서 2023년 9%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율은 62% 감소하였음

— (개체 수) 영국 성인의 57%가 3,8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등록된 개는 1,350만 마리로 나타났고 고양이는 1,250만 마리로 나타남

— 다음으로 새 150만 마리, 가금류 130만 마리, 토끼 100만 마리, 거북이와 기니피그 각각 70만 마리, 챗 바퀴 햄스터, 뱀 및 파충류가 각각 60만 마리로 나타남

2) https://tasschutz.be/index/Tierheimgebiete/?gad_source=1&gclid=CjKCCjw8-2BfCHAR6AF-w1gkUQjM0KHZ7KocBDnQMEIm91UHQaL9PB2VdAp8fKxh1xhLEaApuEALw_wcB

TOP 10 PETS IN THE UNITED KINGDOM



Source: petfoodindustry



<출처>

<https://worldanimalfoundation.org/advocate/pet-ownership-statistics-uk/>

NUMBER OF PET CATS, DOGS AND RABBITS OWNED BY THE UK ADULTS

| | Cat population (millions) | Dog population (millions) | Rabbit population (millions) |
|------|---------------------------|---------------------------|------------------------------|
| 2023 | 11 | 11 | 1.1 |
| 2022 | 11.1 | 10.2 | 1 |
| 2021 | 10.7 | 9.6 | 0.9 |
| 2020 | 10.4 | 9.9 | 0.8 |
| 2019 | 10.9 | 9.9 | 0.9 |
| 2018 | 11.1 | 8.9 | 1 |

Source: PDSA



<출처>

<https://worldanimalfoundation.org/advocate/pet-ownership-statistics-uk/>

<그림 7> 영국의 반려동물 현황

— (선호도) 2023년 Statista가 영국의 남녀 18세 이상 89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동물은 개(3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양이(26%)로 나타남

- 다음으로 토끼(2.8%), 새(2.3%), 햄스터 등 순으로 나타남

—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개로 1,200만 마리, 고양이 1,100만 마리이며 2022년 대비 6% 감소함(UK Pet Food, 2024)

- 2019년부터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고양이를 선호하는 현상이 등장, 2022년 런던의 반려동물 가구 중 61%가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남(Mordor Intelligence, 2024)

○ 영국의 반려동물의 양육형태

— 영국의 반려인 2000명 중 약 48%는 반려동물을 위한 방이나 정원에 공간을 두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가 반려동물의 휴식, 34%가 편안함을 위해 마련한다고 하였음(WalesOnline, 2024)

○ 영국의 반려동물 생애지출

— (입양비) 영국의 반려견 입양비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약 400파운드에서 3,000파운드가 비용이 발생함(Dogestet, 2024)

- 고양이 약 160파운드, 토끼 약 80파운드, 기니피그 약 40파운드, 소형동물 약 20~35파운드, 새 약 20~50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함(Abbey Street, 2024)

— (양육비) 영국의 연간 반려동물 월 지출비용은 약 26~50파운드가 지출되며 반려견에게 연간 약 100억 파운드, 고양이 약 80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음(Dogestet, 2024)

- RSPCA(2023)에 따르면 반려동물 돌봄 비용의 증가로 인해 반려인의 약 38%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장례비) 영국의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반려동물의 종류, 크기, 방식에 따라 장례업체 별로 상이하지만 반려견의 경우 약 130~210파운드, 고양이 약 130파운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ASDAmoney, 2024; Dunham Lawn, 2024)

— (보험 및 의료서비스) ABI(2023)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반려동물 평균 보험료는 2022년 기준 327파운드로 보험 유형, 반려동물의 나이 및 품종에 따라 다르며 매년 비용이 상승하고 있음

- ManyPets가 2023년 11월 영국의 수의사 73명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살펴본 결과, 평균 58.82파운드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의 종류, 상태, 진료시간에 따라 상이함(MauyPets, 2023)

□ 영국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 영국의 반려동물 산업 소비현황

— 2022년 영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소비자 지출액 약 98억 파운드 규모의 시장으로 집계되고 있음(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 영국의 반려동물 사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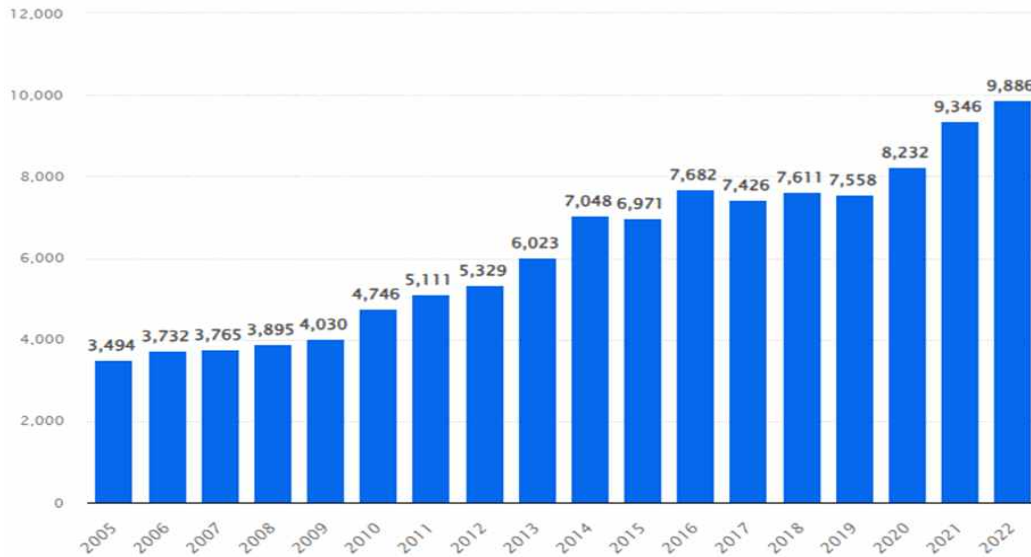
— 영국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2021년 38억 7000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으며, 2027년까지 0.2% 성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4)

- 영국 사료 시장은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오프라인 매장의 반려동물 사료 판매 점유율이 2022년 80.9%를 기록할 만큼 오프라인 사료 시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밖에도 동물병원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은 4.9%,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한국반려동물신문, 2024)

— 최근 반려동물과 인간을 동일시 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에 대한 의식에서 사료부터 천연 및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자연식 사료, 사람이 먹어도 될 만한 품질의 재료와 공정을 활용한 ‘휴먼 그레이트(Human Grade)’ 사료 등 프리미엄 사료의 수요가 높아짐

- 기능성 원료와 보충제 및 영양제의 수요가 증가하고, 사료 내에서 그레인 프리, 글루텐 프리, 인공 방부제와 색소 및 향료 프리를 주장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늘고 있음(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 반려동물의 고유한 요구와 선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식단을 위한 온라인 구독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음(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출처> Statista

<그림 8> <2005~2022년 영국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지출액>(단위: £ 백만)

○ 영국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시장

— (기술관련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라 펫테크(pet tech)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음

— 펫테크 제품으로는 훈련용 도구와 건강관리 및 추적 용품, 자동화 용품, 장난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이 있음

— 또한 GPS와 생체활동 추적기를 갖춘 스마트 목걸이, 급여 시간과 양을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사료 공급장치, 행동패턴을 학습해 이에 맞춰 움직이는 대화형 장난감, 반려동물의 음성과 신체적 변화를 분석해 감정상태를 전달해 주는 의사소통 기기, 스마트 화장실,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해 반려동물을 식별하는 ID 태그 등 원격 모니터링과 반려동물 관리 및 상호작용을 쉽게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 (건강관련 서비스) 영국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음

— 이러한 서비스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머신러닝과 전문 의료진이 분석해 주인도 미처 알지 못했던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반려동물이 아픈 경우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수의사에게 반려

동물의 과거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을 취함(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 (보험 서비스) 펫 보험 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18억 달러이며 지난 5년간 약 2.2%의 성장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영국의 펫보험 가입 비율은 약 25%로 나타남(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 (기타 서비스) 영국 내에서 반려동물 친화적인 직장 및 여행 선호 추세에 따라 다 여행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여행 상품 및 여행 예약 플랫폼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음
- 또한 친환경 장난감 및 액세서리와 포괄적인 반려동물 건강 및 웰니스 솔루션, 프리미엄 수의학 클립, 반려동물 웰니스 센터, 프리미엄 미용실, 펫돌보미 서비스나 산책 도우미 등 반려동물의 개인적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행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자료: Butternut Box 홈페이지]

<펠카나(Felcana) 모바일 앱>



[자료: Felcana 홈페이지]

<출처> 한국펫산업연합회(2023).³⁾

<그림 9> 영국의 최신 반려견 서비스(좌측: 버터넛박스 서비스, 우측: 펠카나 모바일 앱)

2)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현황

□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3) http://kpira.or.kr/sub/sub05_04.php?boardid=news&mode=view&idx=93&sk=&sw=&offset=4&category=

- 영국은 동물복지법을 기반으로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의 삶의 질에 관한 여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함복지 정책 집행 내용과 관련한 중앙 차원의 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소방식까지 정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동물 복지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함
 - (입양) 영국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을 갖춘 ‘브리더(breeder)’에게 분양받거나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음
 - 다만, 브리더는 분양하는 강아지가 태어난 곳에서 어미와 함께 지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또한 2018년 8월부터는 펫샵에서 반려견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경주신문, 2023) 자선단체를 통해 입양 시 약 200~400 파운드의 기부금이 발생함(Forbes, 2023)
 - (등록) 기존에 영국은 반려견만을 법령을 통해 마이크로칩 이식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개정을 통해 반려묘 또한 20주 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함
 - 마이크로칩은 소유자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신(이사 시 주소변경 등)의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함(GOV.UK., 2024)
 - 즉, 반려동물(개, 고양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칩 인증서, 수의사 기록, 반려동물 여권을 소지해야하며 공동주거 안에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등급에 따라 출입가능 장소는 달라짐
 -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목줄과 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태그를 착용해야 함(경주신문, 2023; GOV.:UK., 2024)
 - (사육) 영국은 동물 복지법 제9조를 통해 동물복지 보장을 위한 책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위법으로 간주됨
 - 제9조는 동물의 적합한 환경에 대한 필요, 적합한 식이에 대한 피롱, 정상적인 행양식을 보일 수 있는 필요, 다른 동물과 함께 사육하거나 분리되어야 할 필요,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를 주인이 충족해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충족의 정도는 모범 관행(good practice)의 준하는 정도로 비교적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고자 동법 제12조와 제14조는 구체적인 규정(regulation)과 규칙(code of practice)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⁴⁾
 - 제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51주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설) 영국의 보딩이나 훈련, 번식장과 같은 상업시설에서 개를 사육하는 곳은 켄넬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실내의 거주 구역(Kennel)과 배변 등을 위한 실외 측의 공간(Run)이 벽으로 나뉘어 있고 개폐식 해치(Hatch)를 통해 개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함
 - 오프리쉬(Off-leash)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야외 공간에 수시로 개들을 풀어 놓고 다양한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공놀이, 터그놀이, 장애물 놀이 등)을 제공함
 - 영국의 개 보딩을 위한 면허(Licensing) 규정을 보면 최소 매주 1회 소독과 청소하고 거주하는 개가 바뀔 때마다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함(News펫, 2023)
 - (기부활동) 영국에서 매년 4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동물 자선 단체에 기부 자선하며 현재 평균 기부금은 20.50파운드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작년에 동물 자선 단체에 기부한 사람은 1500만 명으로 집계됨(Pangovrt, 2024)
- 영국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복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다음의 한계를 지적받고 있음
- (유기보호) RSPCA(2022) 연구에 따르면 가계비용의 급등이 동물복지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2022년도 7개월 동안 22,908건의 유기동물을 보고 되었음(INDEPENDENT, 2022)
 - 1860년 처음 설립된 유기견 임시보호소인 배터시 독스앤캐츠홈(Battersea Dogs & Cats Home)은 현재 런던과 올드윈저, 브랜즈해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7000여 마리의 동물이 보살핌을 받으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호소마다 400여 명의 직원과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유기동물의 사회화 활동은 물론 청소, 행정업무, 교육 등을 돕고 있음
 - 이들은 정부와 함께 동물보호 강화 법안도 추진하며 명견관리법안 철폐, 동물학대 처벌 강화, 퍼피밀 금지, 동물 생산 및 판매업 관리 강화, 반려견 마이크로칩 의무

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5/introduction>

화 등 각종 캠페인도 진행함(News팻, 2023)

- (안락사) 영국에서는 유기견 발견 시 법적 책임은 지방 자치 단체에 7일 동안 있으며, 그 후 의회는 개를 판매, 기부 또는 안락사로 처분할 수 있음
- 판매와 기부 대개 연구 목적으로 의료 시설로 옮겨지며 2023년 기준 영국에서 매일 21마리의 개가 안락사되고 있음(DOGGO, 2023)

□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 조직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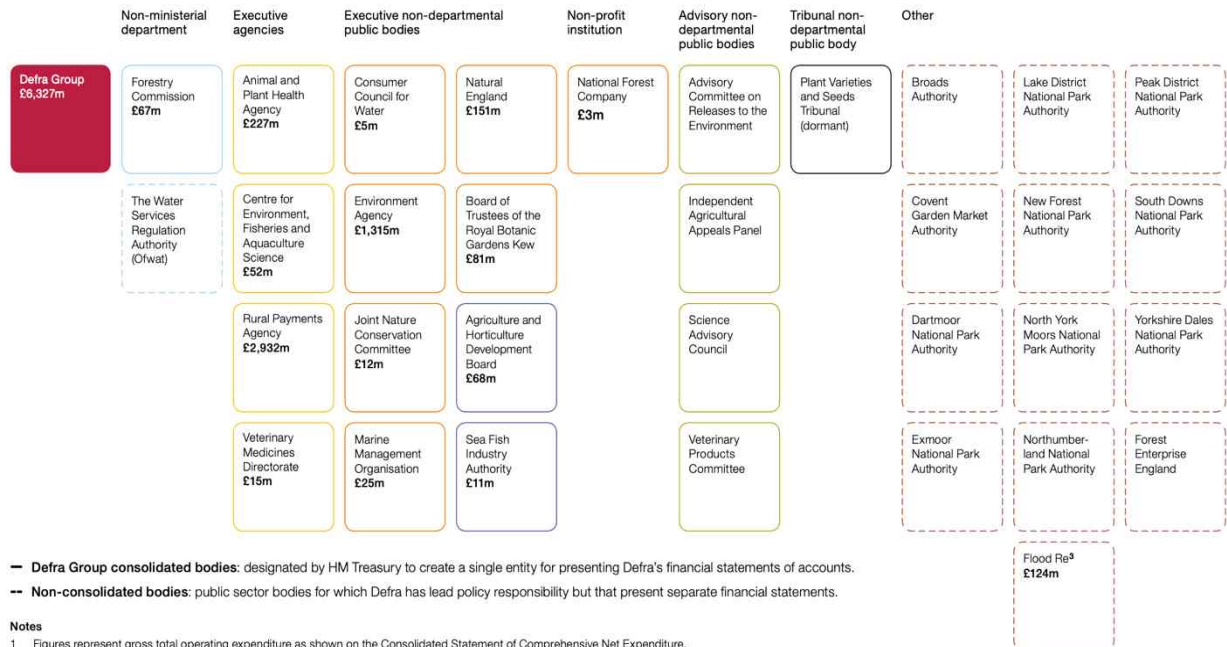
○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는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이하 DEFRA)로 환경보호, 식품안전, 동물 복지, 농촌 경제 및 지역개발, 재난 및 위기 관리, 어업 및 해양의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함(DEFRA 홈페이지)

- DEFRA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2024년 개정))」에 따라 동물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s)을 제정할 권한을 지님
- DEFRA는 현재 내각장관(Secretary of State)아래 한명의 부장관(Minister of State) 세 명의 정무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 한명의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이 있음⁵⁾
- 장관의 정무적 업무를 보좌하는 동물복지는 세 명의 정무차관 중 한 명인 상원 정무차관(Lords of minister)의 책임임
- 해당 정무차관은 생물안전 및 식물 건강, 수입 및 수출 규제와 관련 식물 및 동물보건 보호 조치, 동물 복지, 인간-동물-환경 건강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종합적 건강 보호, 접근성 개선을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수의약품동물의약품감독국(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이하 VMD)과 동식물건강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이하 APHA)과 관련한 DEFRA 기능을 총괄함
- 동물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차관 아래 국장급인 수의심의관(Chief Veterinary officer)이 담당함
- 수의심의관은 DEFRA의 동물건강과 복지 문제의 수석대변인으로 동물건강과 복지 정책 수립에 책임을 지고 집행에 영향을 미침
- 그 외에도 희귀동물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 질병 통제 및 근절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5) 영국의 차관제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모두 두고 있으며, 정무차관이 사무차관보다 직급 상 상위에 위치함. 의원내각제에서 정무차관은 의원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정무적 성격의 공무원으로 법규정의 제정 등에 책임을 지고 의회와의 조정업무를 수행함. 사무차관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보에 대응하며, 관료가 승진할 수 있는 최고 직위로 내무사무를 책임짐.

공공수의사의 수장으로써의 역할에 책임을 짐

The Department devolves much of its policy implementation to 33 delivery bodies.



- **Defra Group consolidated bodies:** designated by HM Treasury to create a single entity for presenting Defra's financial statements of accounts.
- **Non-consolidated bodies:** public sector bodies for which Defra has lead policy responsibility but that present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Notes

- 1 Figures represent gross total operating expenditure as shown on the Consolidated Statement of Comprehensive Net Expenditure.
- 2 Defra's total expenditure includes that of network bodies (including direct payments under the EU's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expenditure on its own activities.
- 3 **Flood Re** is a reinsurance scheme that makes flood cover more widely available and affordable as part of home insurance.
- 4 Expenditure for Core Defra is included in the Defra Group - the individual amounts for the bodies shown do not represent the total gross operating expenditure.
- 5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 and Sea Fish Industry Authority are levy-funded bodies.

<그림 10> DEFRA GROUP 조직도

- 동물복지법 제12조(규정(Regulation)의 제정)와 제14조(실무규정(Code of Practice)의 제정)에 근거해 동물복지법 제9조에 정하는 동물복지 보장을 위한 책임자, 즉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함
-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2018년 제정된 동물복지규정(The Animal Welfare Regulations), 일명 루시법으로 불리는 규정으로 DEFRA는 이 규정의 제정을 통해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가 금지되었음
- 마이크로칩 이식을 강제하는 고양이 및 강아지의 마이크로칩 이식에 관한 규정(The Microchipping of Cats and Dogs Regulations 2015) 또한 이에 해당함
- 이러한 규정(Regulation)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위반 시 법적 처벌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반면 실무 규정(Code of Practice)은 위반이 반드시 위법한 행위로 여겨져 처벌받지는 않으나, 동물복지법 제9조의 위반으로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실무 규정의 위반 여부가 판단의 근거로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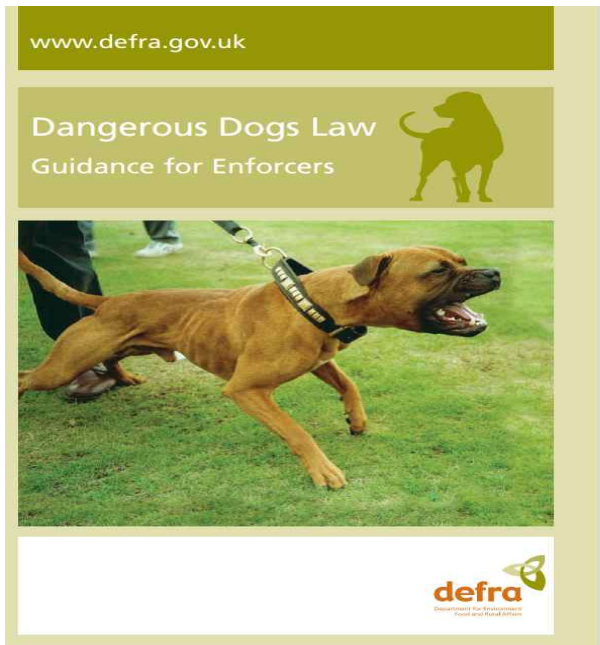
— DEFRA의 내각장관은 명령을 통해 실무규정의 대상이 되는 규제기능을 행사하는 규제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박도영, 2006)



<출처> 동물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2021)

<그림 11> DEFRA에서 제정한 개별 동물의 복지를 위한 실무규정

- 또한 직접적으로 규정을 통해 법적기준을 설정하고 관련한 규제 등을 시행하지 않
더라고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지원함
- 예를 들어 맹견법(Dangerous Dogs Act 1991)에 따라 내무부에서 관할하는 특정
개 품종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DEFRA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
지는 않으나,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부처로서 지침서를 제공하는 등 맹견
법에 근거한 규제를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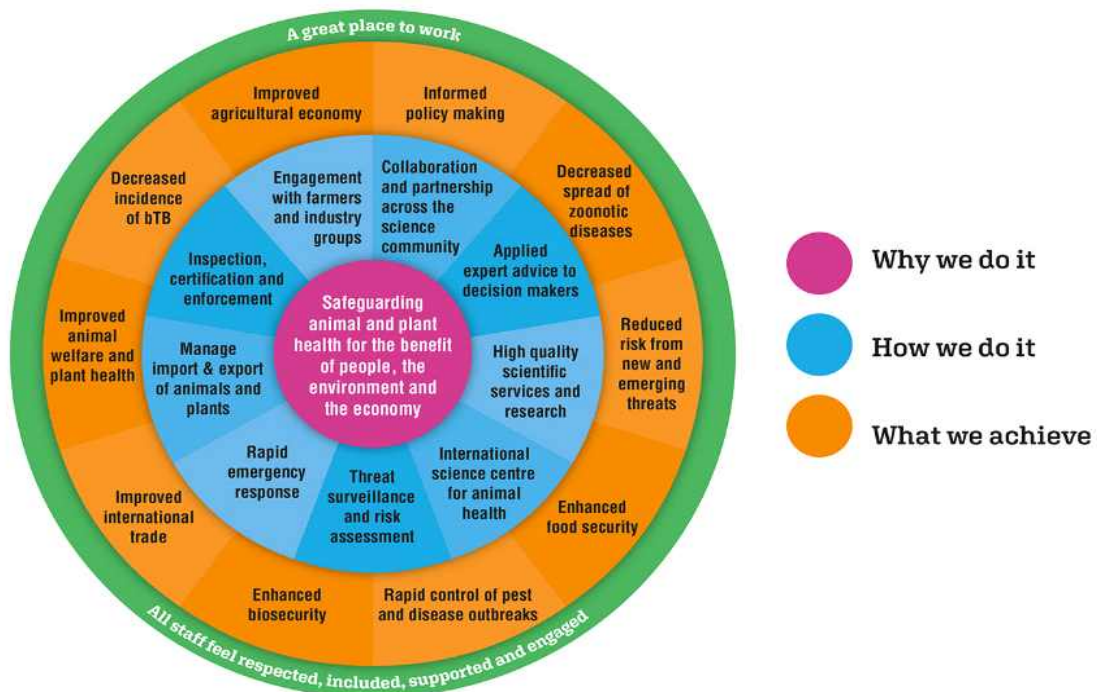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Nobel House
 17 Smith Square
 London SW1P 3JR
 Telephone: 020 7238 6000
 Website: www.defra.gov.uk
 © Crown copyright 2009
 Copyright in the typographical arrangement and design rests with the Crown.
 This publication (excluding the logo) may be reproduced free of charge in any format or medium provided that it is reproduced accurately and not used in a misleading context. The material must be acknowledged as Crown copyright with the title and source of the publication specified.
 This document is also available on the Defra website.
 Published by 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Cover Image: Pit Bull type dog, photo courtesy of the RSPCA.
 PB13225
 March 2009

<출처><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755914ed915d6faf2b24bc/dogs-guide-enforcers.pdf>

<그림 12> 맹견법 담당조직을 위한 지침서

- 동식물건강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이하 APHA)는 DEFRA 소속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으로 동물과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물 안전 및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관한 역할을 수행함
 - APHA는 동물보건 및 실험연구원(Animal Health an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의 개편을 통해 출범하였으며, 동물복지와 관련하여서는 동물의 사육, 운송, 도축 등의 단계에서 복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함
 - APHA는 수의검사관제도를 운영하여 주요 질병 통제 및, 질병 위험을 감독하는 동시에 농장, 이동 중, 시장에서 동물의 복지과 건강 증진에 관한 감독을 수행함
 - 2020-2021년 동안 APHA는 1967건의 복지 방문을 완수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함 (APHA, 2022)
 - APHA는 DEFRA와의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 기준 증진을 위해 노력하지만, 각 지방정부(웨일스, 스코틀랜드)이 법령과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도 함⁶⁾

6) <https://www.gov.scot/publications/animal-health-welfare-framework-2020-2022/pages/6/>



<출처><https://aphavets.co.uk/who-we-are-and-what-we-do/>

<그림 13> APHA의 전략체계도

○ 동물의약품국(The 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이하 VMD)은 DEFRA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동물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효능의 보장함으로써 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함

— 이들은 동물의약품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대응,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성 제품의 불법 물질 잔류물 검사, 동물의약품 판매에 대한 신청서 평가 및 승인, 동물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방식 통제, 동물의약품 정책 개발 및 실행에 관한 DEFRA 자문, 동물의약품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짐⁷⁾

○ 지방정부는 부처에서 정한 법령과 규정에서 따라 동물복지 정책을 수행하며, 수행 중 동물복지법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기소권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지방정부는 의회와 DEFRA에서 정한 법령과 규정 등의 실제적인 집행을 담당함

— 대표적으로 지방정부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마이크로칩 이식에 대한 집행 책임을 짐

— 특히 지방정부는 동물복지법 제30조에 따라 동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

7)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의 제정은 DEFRA 장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규정이 제정된 이후 VMD는 관련 Standard for regulatory work)을 제공함

한 기소권을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기소권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오직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만 지방정부의 기소가 가능함.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각각의 개별적 동물보호법에 따라 범죄를 다루고 있음

— 이러한 기소권의 부여는 영국의 사인소추주의, 그 중에서도 공중소추주의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예시임⁸⁾

□ 비정부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

○ 영국의 주요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활동

— 영국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이하 RSPCA), Blue Cross,(People's Dispensary for Sick Animals, 이하 PDSA), Dogs Trust 등의 동물복지를 위한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이중 RSPCA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복지단체로 동물학대중지, 동물케어, 동물복지를 위한 캠페인, 동물복지 교육 등을 수행함

— 동물복지조사관은 동물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RSPCA는 지방정부와 함께 동물복지조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동물의 구조, 소유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언과 교육, 동물복지법에 의거한 법 위반자 기소를 진행함

— RSPCA는 매년 약 20명의 동물복지조사관을 선별, 교육하고 제도를 운영함

— 동물복지조사관은 동물의 구조, 소유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언과 교육, 동물복지법에 의거한 법 위반자 기소를 수행함

— 조사는 때에 따라서 경찰을 함께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 가택에 대한 진입, 소유자와 반려동물의 간의 격리 및 반려동물 보호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음

— 동물복지법은 조사관에게 직접적인 기소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RSPCA는 사인소추주의에 따라 영국의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사적기소(Private Prosecution) 제도를 활용하여 기소권을 행사함¹⁾⁹⁾

○ 영국은 마이크로칩 이식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함(동물복지법 제7조, 제8조)

8) 사인소추주의는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로 이해함. 피해자의 소 제기를 인정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공중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이외의 사람의 소 제기도 인정하는 공중소추주의가 이에 해당함

9) 사적기소란 영미법 국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 형사 사건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국은 모든 시민이 공익을 위해 사적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공중소추주의를 따르기 때문)

- DEFRA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자는 DEFRA의 승인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접근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3. 미국

1) 개요

□ 미국의 반려동물 현황

○ 미국의 반려동물 양육현황

- (반려가구 현황) 미국 애완동물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이하 APP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반려동물 가구가 약 66%(8,690만)로 나타남(MarketWatch, 2024; 벨류파인더 인텔스보고서, 2023)
- (개체 수) 반려동물 종류로 살펴보면, 반려동물의 대표주자인 개와 고양이 두 종을 1마리라도 키우는 가정이 각각 약 6900만 가구와 4530만 가구로 가장 많았음
- 그 외에는 민물고기(Freshwater fish), 새, 소동물(Small animal), 파충류, 말, 바닷물고기(Saltwater fish) 등이 포함 됨(Kotra, 2023)
- (선호도) APPA의 National Pet Owners Survey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반려동물은 개로 6510만 명, 고양이 4650만 명, 민물고기 1100만 명, 작은 동물 670만 명, 새 610만 명, 기타 순으로 나타남(MarketWatch,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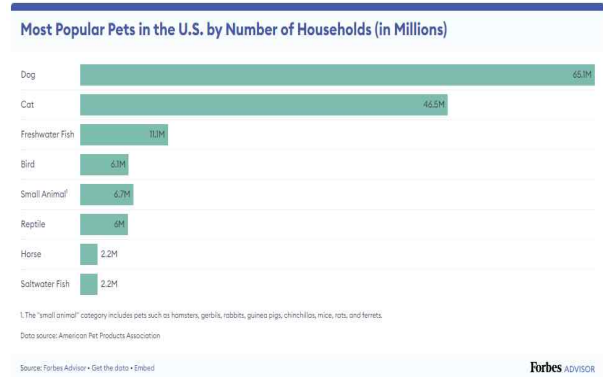
<2021~2022년 미국 주요 반려동물 종별 보유 가구 규모>
(단위: 백만 가구)

| 종류 | 보유 가구 수(중복) |
|-----------------------|-------------|
| 개(Dog) | 69 |
| 고양이(Cat) | 45.3 |
| 민물고기(Freshwater fish) | 11.8 |
| 새(Bird) | 9.9 |
| 반려동물 보유 가구 전체 규모 | 90.5 |

[자료: 미국 반려동물제품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출처>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7211



<출처>

<https://www.forbes.com/advisor/pet-insurance/pet-ownership-statistics/>

<그림 14> 미국의 반려동물 보유 현황

○ 미국의 반려동물의 양육형태

- 미국에서 대부분 반려동물의 양육은 집에서 키우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반려동물의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 약 51% 정도로 일반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20~30% 이상 비싸고 인기가 높으며 거주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남
- 퓨 리서치 센터자료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에 사는 미국인(71%)이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53%)보다 반려동물을 키울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인종에 따라 백인과 히스패닉 성인이 아시아인과 흑인 성인보다 반려동물을 키울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남
-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거나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반려동물을 키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Market Watch, 2024)

○ 미국의 반려동물 생애지출

- (입양비) 미국에서 구조센터나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비용은 약 50~300달러로 수의사 검사, 불임수술, 예방접종, 벌레퇴치, 태그, 칼라 및 마이크로칩 이식비용이 포함되어 있음(Money, 2024)
- (양육비) BLS의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 가구는 연간 반려동물에 평균 741달러를 지출하며 양육비에는 사료, 용품, 예방 접종, 수의사 방문, 손질, 애완동물 보험 등이 포함됨(Forbed ADVISOR, 2024; Market Watch, 2024)
- 개의 경우 연간 평균 2,524달러, 월간 210달러를 애완동물 관리 비용으로 지출하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험으로 나타남(Forbed ADVISOR,

2024; Market Watch, 2024)

- (장례비) 미국의 반려동물 장례 방법은 화장방법과 묘비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례업체마다 차이는 있으나 장례 서비스 비용은 약 700~1000달러, 화장 비용은 25~300달러, 매장 비용은 400~550달러로 선택사항과 주별로 상이함(Titan, 2024)
- (보험 및 의료 서비스) Forbes Advisor의 분석에 따르면, 개의 평균 반려동물 보험 비용은 한 달에 44달러이고, 고양이의 평균 반려동물 보험 비용은 한 달에 30달러로 나타남(Forbed ADVISOR, 2024)

□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소비현황

- 미국 반려동물 제품 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이하 APPA)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시장의 실질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약 11% 성장함
 - 2024년에는 80.69십억 달러로 추산되며, 예측 기간(2019년~2029년) 동안 연평균 5.06% 성장하여 2029년에는 103.27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Kotra, 2023; Mordor Intelligence, 2024)
- 반려동물 반입 시장 분야 중 식품 및 간식 분야가 약 581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59억 달러 규모의 동물병원 진료 및 관련 제품 분야가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Kotra, 2023)¹⁰⁾
- 최근 미국 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온라인 소매 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ordor Intelligence, 2024) 2030년까지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2,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미국의 반려동물 사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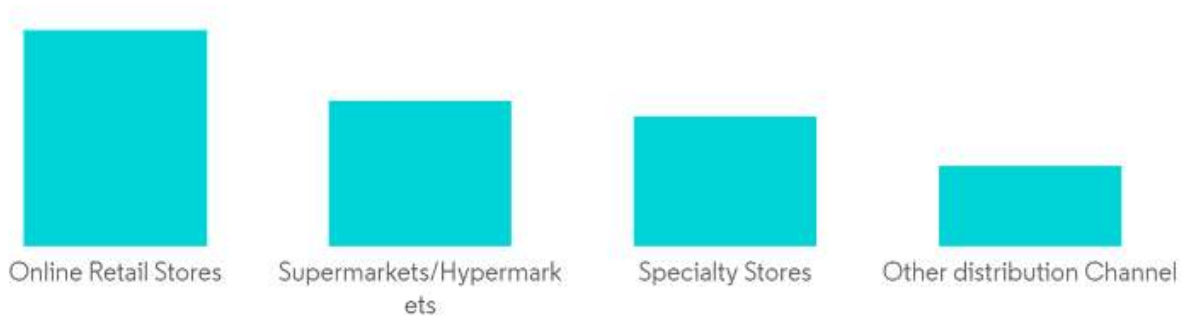
- GLOBE NEWSWIRE(2024)의 Astute Analytica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가치가 2023년 52억 9,63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시장 규모가 87억 3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는 2024~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67%로 예측되며 이 중 북미지역은 가장

10) 2023년 APPA의 조사를 살펴보면 반려동물 산업 시장의 주요 분야를 반려동물 식품 및 간식(Pet food & treats), 반려동물 용품(Supplies) 및 비처방 의약품(OTC medicine), 동물병원 진료 및 관련 제품(Vet care & product sales), 미용(Grooming)·훈련(Training)·보험(Insurance) 등을 포함하는 기타 서비스의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큰 시장으로 전체의 약 36.2%를 차지하고 있음(Yahoo!finance, 2024_1)

- 미국 반려동물 제품 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반려동물 사료, 간식 및 기타 제품 매출은 약 1,470억 달러 중 사료와 간식 매출은 644억 달러를 차지 함(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2023년 6월 기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시장 조사 기관인 써카나(Circana)에 따르면 건건 사료(dry dog food) 판매량은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건묘 사료(dry cat food) 판매 역시 전년 대비 21.8% 증가함
- 또한 반려견 간식은 2023년 39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반려묘 부문은 2023년 1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미국 내 반려동물 사료산업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이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알고리즘을 통한 사료 추천 서비스인 정기 배송 서비스(구독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2)

United States Pet Market: Revenue in USD Million, by distribution Channel, 2021



Source: Mordor Intelligence



<출처><https://www.mordorintelligence.kr/industry-reports/united-states-pet-market>

<그림 15> 미국 반려동물 시장 소매 채널 비교

○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시장

- (기술관련 서비스) 미국 내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음
 - 블루투스, GPS 또는 RFID를 사용하는 스마트 펫 제품과 웨어러블 제품, Wi-Fi 또

는 홈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제품 판매되고 있으며 스마트 홈케어 제품, 위치추적기, 간식 디스펜서, 오드 티브이(Dog TV)등이 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2)

— (건강관련 서비스) 동물건강 전문기업 Zoeti(NYSE: ZTS)에 따르면 미국 내 반려동물 의약품 매출이 2023년 매출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개와 고양이 매출이 73%로 나타남(Yahoo!finance, 2024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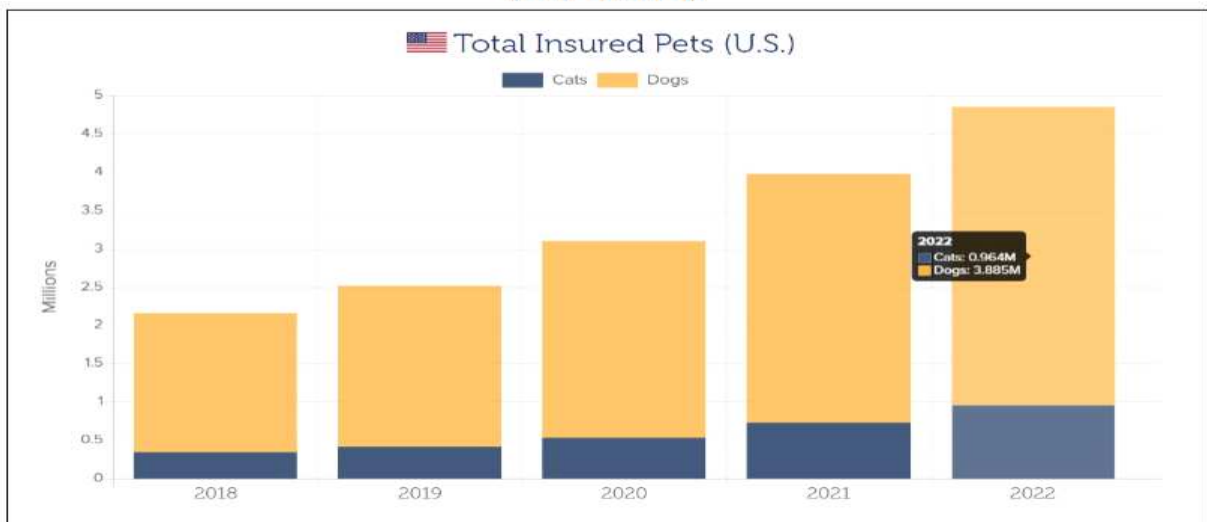
— 미국 시장에서 2024년 반려동물 케어를 위한 지출은 1,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미국 내에서는 동물 수의학 진료의 약 30%가 원격 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60여 개의 동물의료 스타트업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2)

— (보험 서비스) 북미 반려동물건강보험협회(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이하 NAPHIA)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보험 가입 반려동물 규모는 약 485만 마리로 반려동물 중 약 45%가 펫 보험에 가입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펫 보험(Pet insurance)은 사람의 실비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보험 상품으로, 월별 보험료는 보장 범위(Coverage)·자기부담금(Deductibles)·대상 반려동물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적으로 약 50달러 내외로 책정되어 있음(Kotra, 2023)

(단위: 백만 마리)



<출처>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7211

<그림 16> 미국의 보험 가입 반려동물 규모 변화 추이

2) 미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현황

- 미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은 비영리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선진화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지나,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일관성이 떨어짐
 - (입양) 미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브리더를 통해 입양하는 방법과 가정견 입양, 구조센터나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방법이 있으며 구조센터나 보호소의 입양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좀 더 까다로움
 - 먼저 입양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후 추천인과 거주공간 내 반려동물 허용 여부, 소득증빙, 가정방문을 완료 후 신청서가 수락될 수 있다. 보호소나 구조센터에서 입양할 때는 최소 만 18세(주별로 상이할 수 있음)가 되어야 함(Money, 2024)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농무부에서 제시한 자료(유통자의 이름, 주소, 농무부 자격증 등)를 모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500달러(한화 약 330만원)이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두 번째 위반 시 5000달러(한화 약 661만원)으로 증가하고 세 번째 위반시 영구자격 정지가 내려짐(1코노피뉴스, 2023)
 - (등록) 미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에는 등록소를 선정하고 신청서(연락처 정보 및 반려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하고 결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며 등록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주 정도 지나면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음(wikihow, 2024)
 - 그리고 매년 미국은 등록 갱신제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하며 갱신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인식표 색을 바꾸며 약 3만~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함(주간동아, 2024)
 - (사육) 미국에서 4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개, 고양이)는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며 항상 목줄이나 하네스에 인식표를 착용해야 함
 - 야외 고양이는 불임수술을 받고 마이크로칩을 이식받아야 하며 개는 울타리나 승인된 카트에 묶인 때 주인이 사는 부지 내에서만 사육해야 함
 -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여 일반적인 가정에서 한 가구당 4마리의 개와 4마리의 고양이를 초과할 수 없음(CITY OF LITTLE ROCK, 2023)
 - (시설)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시 가이드 라인에서는 약 2,000㎡ 이상, 미국 최대 애견협회인 아메리칸 켄넬 클럽(American Kennel Club: AKC)에서는 4,000㎡ 이상

을 충분한 규모의 반려견 공원 면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 미국 AKC에서 제시하는 권장 면적인 4,000m² 이상의 경우, 동물놀이터와 반려동물공원이 혼재되어 있음(Auri 건축공간연구소, 2023)

○ 미국의 동물복지 정책의 단점은 다음과 같음

— (유기보호) Shelter Animals Count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내 보호소 개체 수가 22% 증가함(Newsbytes, 2024)

—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사료비, 의료비 등의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CBS NEWS, 2024)

— 미국은 동물유기 시 최대 5~6년의 징역에 벌금도 주마다 최소 340만 원(2천500 달러)에서 최대 1천300만 원(1만 달러)을 부과됨(경인방송, 2024)

— (안락사) 미국 내 보호소에 매년 92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안락사되고 있는데 개는 약 390,000마리, 고양이 530,000마리로 고양이가 더 많이 안락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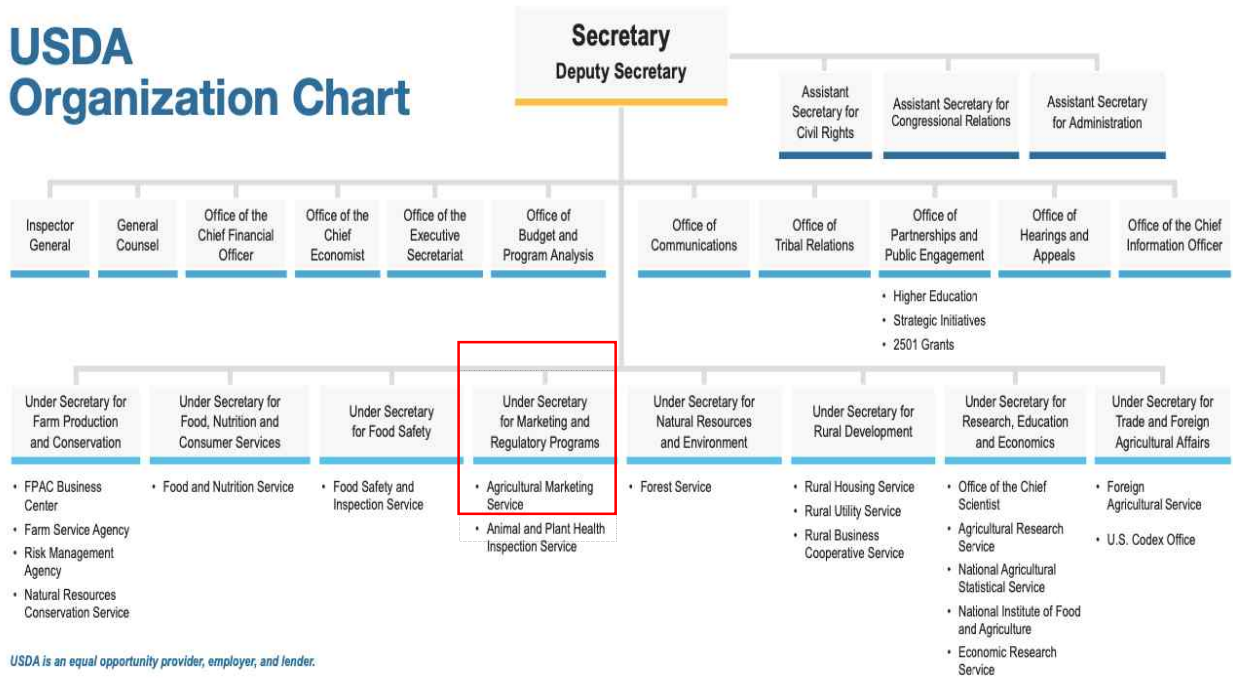
— 반려동물이 안락사되기 전 보호소에서는 최소기간이 일반적으로 5~7일 정도 머물 수 있음(Forber ADVISOR, 2024)

□ 미국 반려동물 복지 정책 조직과 기능

○ 미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 수준의 조직은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로 이중 동물복지는 마케팅과 규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차관(Under Secretary)이 이끄는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APHIS)에서 수행함

— 이러한 조직 구조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동물복지를 규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USDA Organization Chart



USDA is an equal opportunity provider, employer, and lender.

<출처> 농무부 홈페이지

<그림 17> USDA 조직도

○ APHIS는 USDA의 소속 기관으로 연방법인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를 집행하는 책임이 있으며, 동물에 대한 인간의 치료 보장, 동물복지를 위한 센터의 운영, 위기상황에서의 동물보호 등을 수행함(APHIS 홈페이지)¹¹⁾

— APHIS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중 판매점, 브로커, 연구시설 등에 관한 자격과 규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함

— 구체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불만 접수, 동물복지법에 따라 허가되거나 등록 사람들에 대한 정보 검색, 동물 관련 사업 준비시 필요한 허가나 등록 신청, 시설이나 활동이 동물복지법 기준에 맞는지 검사 준비 제언, 연구시설의 연차 보고서 제출, 동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 관련 비상사태 준비, 수의사와 그들의 책임에 대한 정보 제공, 법률규제에 대한 가이드 제공, 상업적 판매 또는 입양을 위한 반려견 수입에 필요한 절차 마련 등을 수행함

○ 미국의 주 정부는 독일, 영국과는 달리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함

— 판매자, 연구기관 등의 동물의 수송, 관리 등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여러 내용

11) <https://www.aphis.usda.gov/animal-care/awa-services>

을 연방법인 동물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반려동물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동물복지는 주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2021)

— 미국 주 정부는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위해를 미쳤을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모두 두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경우 모든 주 정부가 통일된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이가 주 별로 나타남

— 예를 들어 미국의 27개 주만이 목줄 길이와 무게, 종류, 목걸이의 기준을 정하고, 묶인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가능한 반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두고 있으며, 33개 주만이 극한 날씨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사육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미국 주법의 특징 중 하나는 보험법에 펫보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4개 주가 입법을 완료하였으며, 4개 주가 법안을 심의중임(김원각, 2023)

— 미국의 펫보험조항 신설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초기상품설계의 부실성, 건강보험과 펫보험 차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 보집인 자격의 혼란과 전문 자격 없는 자의 약관 설명에서 비롯된 문제, 펫병원정규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보험으로 오해하기 쉬운데도 (마케팅 차원에서) 원스톱서비스를 강조하는 점, 회사명보다 상품명 위주의 판매, 감독대상의 불명확 등”을 원인으로 논의가 시작되면서 입법수요가 나타남(김원각, 2023)

— 가장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보험법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통일, 용어의 공시 방법 규정, 보험금 지급 사례 명시, 여유로운 검토기간의 부여, 법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내용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펫보험의 감독 당국은 주보험국으로 하고 있음

□ 비정부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

○ 미국의 주요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활동

— 미국은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이하 ASPCA), Best Friends Animal Society,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등의 비영리 단체가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

하고 있음

-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인 ASPCA는 동물구조, 동물병원 운영, 이동입양센터 운영 및 입양 프로그램 운영,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 중성화 수술클리닉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법률 및 정책연구 추진 등 다양한 동물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ASPCA는 뉴욕경찰과의 협약을 통해 피학대 동물 구출을 추진하고 있음
 - 동물경찰권은 2014년까지 ASPCA에 있었으나, 동물학대에 대한 대응을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기존의 협력은 유지하되, 이후 동물경찰권은 뉴욕경찰에서 가져가게 되었음
- 뉴욕 경찰과 ASPCA는 2019년 이동 지휘소(특수 차량)를 도입하여 동물보호 체계를 제고하였음(이진홍·박상진, 2020)
- NYPD는 뉴욕시의 다섯 자치구 어디에서든 동물 학대가 신고되면 대응의 주도권을 가지고 ASPCA는 법의학 평가, 의료 치료, 동물 행동 평가 등을 통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함

Addressing and Preventing Animal Cruelty in NYC



<출처> ASPCA 홈페이지¹²⁾

<그림 18> ASPCA는 뉴욕경찰의 협력 체계 홍보 내용

12) <https://www.asPCA.org/investigations-rescue/addressing-and-preventing-animal-cruelty-nyc>

4. 일본

1) 개요

□ 일본의 반려동물 현황

○ 일본의 반려동물 양육현황

- (반려가구 현황) 유로모니터(2023)에 따르면, 일본의 개와 고양이 개체 수는 지난 2018~2022년 사이 1.5% 이상 감소했으며, 2008년 1300만 마리 2018년 1640만 마리에서 2022년에 1600만 마리로 줄어들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3)
- 하지만 일본 펫푸드 협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 가정의 약 40%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길 원한다고 조사됨(한국반려동물신문, 2023)
- 현재 일본 반려동물 개체 수가 감소 중이지만 개를 키우는 반려동물 가정의 수가 현재 10%에서 가까운 미래에 14%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고양이 개체 수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한국반려동물신문, 2023)
- (개체 수) 2022년 일본 펫푸드 협회 조사에 따르면 개 사육두수는 약 705만 3천 마리, 고양이는 약 883만 7천 마리로 합쳐서 1,589만마리로 나타남(Kati농식품수출정보, 2024)
- 이어 2023년 반려동물사료 협회가 조사한 결과, 전체 반려견 수는 6,844,000마리(2022년 대비 209,000마리 감소), 반려묘는 9,069,000마리(전년 대비 232,000마리 증가)로, 총 15,913,000마리(2022년 대비 23,000마리 증가)로 나타남(마이니치, 2024)
- 일본 펫푸드 협회(2023)는 개 개체 수가 2008년 기준 1300만 마리에서 2022년 750만 마리로 감소한 이유로 △인구 고령화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좁은 주택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 반려견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함(한국반려동물신문, 2023)
- (선호도) Rakuten Insight(2023)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개 11.6%, 고양이 9.6%로, 민물고기 4.8%, 새 1.6% 거북이 1.5%, 등 순으로 나타남(Statista_1, 2023)
- 개체 수를 살펴보면 고양이가 개보다 더 높지만 개가 더 선호되고 있는데 그 이유

로는 「인기심」(66.7%), 「충성심」(40.3%), 「귀여움」(37.1%) 때문으로 나타났고 반면 고양이는 '귀여움'(52.7%), '외형'(42.9%), '시구사'(36.6%) 때문에 선호한다고 조사됨(マイナビニュース, 2024)

○ 일본의 반려동물의 양육형태

- 일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으로 나타남
-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빌라는 반려동물의 양육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고 키우는 자격이 검증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편으로 나타남
- 또한 반려견의 경우 이웃의 피해를 염려하여 조심스러워하며 반려견 문화의 기본적식이 높음
- 또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높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있음(경주신문, 2024)

○ 일본의 반려동물 생애지출

- (입양비) 반려동물의 입양비는 보호소마다 다르지만 평균 15,000엔~ 20,000엔으로 중성화, 예방접종, 마이크로칩 이식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Tsunagu Local, 2021)
- 펫숍의 경우 품종이나 크기에 따라 입양비가 다르며 약 43,430엔~325,000만엔에 달함(경주신문, 2024)
- (양육비) Anicom손해보험(2023)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에 대한 연간 지출액은 2022년 기준 개가 357,353엔, 고양이가 160,766엔으로 개의 경우 고양이의 2배 이상 높으며 지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특히 개, 고양이의 지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펫푸드·간식’으로 2022년 기준 개는 연간 66,066엔으로 18.5%, 고양이는 연간 49,103엔으로 30.5%에 달함(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이밖에도 애완동물 양육에 필요한 지출 항목은 사료비(33.4%), 간식비(17.8%), 일용품 구입(11.1%), 미용·컷트비(10.0%), 위생 서비스 이용(5.8%), 완구구입(5.6%), 패션·잡화 구매(4.1%), 애완동물 관련 콘텐츠 구매(2.9%), 애완동물 보험료(2.4%) 순으로 반려동물 먹이 관련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 함(JETRO, 2022)

- (장례비) 일본의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지방자치단체(청소국, 환경위생국, 위생국 등 지역에 따라 다름)에 연락하여 인수받는 방법과 민간 애완동물 장의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며 지자체에서 화장할 경우 수천엔~1만엔 전후의 비용이 발생함
- 그럼에도 지자체에서의 화장을 선택하는 것은 비용보다 취급에 조심하고 싶은 것으로, 지자체에 따라서는 일반폐기물로 소각되어 버려지는 경우도 있음(小さなお葬式, 2024)
- 민간업체를 통한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애완동물의 종류나 크기, 내용에 따라 다르며 작은 동물은 1~2만엔, 고양이나 소형견은 2~3만엔, 중형견은 3~4만엔, 대형견은 4~6만엔 정도로 나타남(小さなお葬式, 2024)
- (보험 및 의료 서비스) 일본의 반려동물의 보험은 정률 보상, 정액 보상, 실비 보상 등 3종류의 보상 타입이 있으며 보험료 시세는 매달 800엔~2,560엔 정도 듦
- 반려동물 보험 요금은 개는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고양이는 일률적인 경우가 많음(株式会社, 2024)
- 이 밖에도 전체 반려동물 지출비에서 예방의료의 일환인 영양제와 백신·건강진단 관련 비용까지 포함하면 개의 경우 31.5%, 고양이는 29.7%로 먹는 것 못지않게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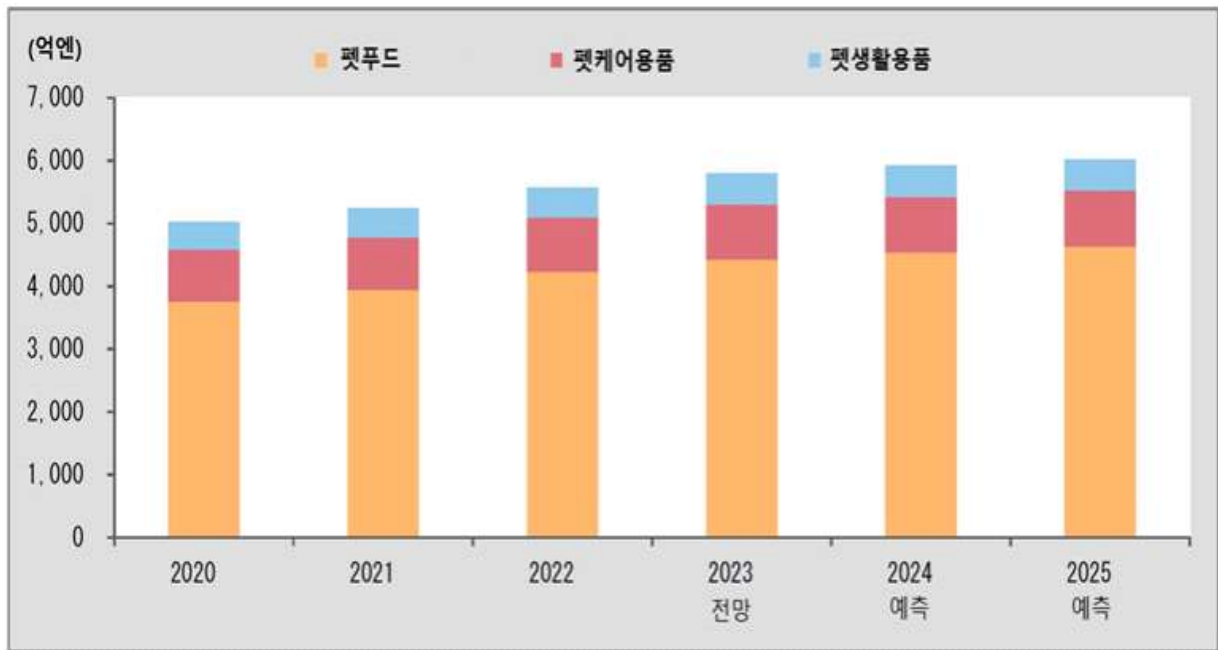
□ 일본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 일본의 반려동물 산업 소비현황

- 일본의 반려동물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반려동물 분양을 포함한 전체 시장의 규모는 소매액 기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1조 7,542억엔, 2023년의 총 시장규모는 전년도 대비 4.5% 증가한 1조 8,629억엔, 2024년의 총 시장규모는 소매금액(말단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2.1%인 1조 9,026억엔으로 예측하고 있음(야노경제연구소, 2024; Kati농식품수출정보, 2024)
- 반려동물산업시장 확대의 배경에는 물가인상 외에도 반려동물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 일본 펫푸드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수명은 개의 경우 2010년 13.87세에서 2022년 14.76세로 0.89세 늘어났으며, 고양이의 경우 2010년 14.36세에서 2022

년 15.62세로 1.26세 늘어남

—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관한 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개는 55%, 고양이는 40%가 정기적으로 반려동물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며 돈을 들여서라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겠다는 주인이 53%를 차지함(Kati농식품 수출정보, 2024)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103&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그림 19> 반려동물 산업시장 규모

○ 일본의 반려동물 사료시장

- 일본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점유율이 18%(2022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 국가임
- 일본의 사료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5.58억 달러, 2029년 6.84억 달러로 추산되며, 개 사료는 49.91%, 고양이는 40.6%를 차지함(Mordor Intelligence, 2024)
- 최근 일본 사료 시장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소재로 만든 기호성이 높은 신선 펫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고기나 채소, 생선 등 소재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휴먼 그레이트(Human Grade) 제품, 국산 원료 사용이나 보존료, 착색료, 향미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수의사와 공동개발이나 감수한 제품이 늘어나고 있음

- 앞으로 제조업체가 증가하고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인해 2027년에는 신선 펫푸드의 시장규모가 2023년보다 2.5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됨(Kati농식품수출정보, 2024)
- 이밖에도 개와 고양이가 자주 걸리는 특정 질환에 영양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 증상에 맞춘 치료식도 주목을 받고 있음
- 특히 고양이용 치료식은 개에 비해서 사육두수가 많아 각 제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Kati농식품수출정보, 2024)

○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시장

- (기술관련 서비스) 최근 일본 내에서 반려동물과 기술을 합친 반려동물 테크 (Pet-Tech)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에 IoT,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이 서비스는 초기 단계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애완동물을 관찰하는 등 간단한 서비스·제품에서 최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반려동물의 기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함(JETRO, 2022)
- (건강관련 서비스)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커트, 샴푸, 발톱 등 미용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1회당 요금이 최근 5년간 약 10% 정도 증가함
- 또한 반려동물의 치아관리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치아관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Kati농식품수출정보, 2024)
- (보험 서비스) 일본 내 반려동물의 고령화로 보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16%이며 일본, 반려동물보험 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일본 펫보험 보험료는 약 1179억엔으로 추정되고 최근 3년간 CAGR(연평균성장률)은 12.6%로 높은 성장률 보이고 있음(Metro, 2024)
- 현재 일본 국내 반려동물보험은 다양한 19여 개의 손해보험사와 소액 단기보험회사가 있음
- 이 중 애니콤 손해보험, 아이펫 손해보험이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마다 다양한 보장범위의 보험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데 예로, 애니콤사는 8세 이상 반려동물 전용 '동물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70% 보장의 경우 인

기 있는 토이 푸들은 월 3070엔, 고양이는 1390엔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음
(한국애견신문, 2023; Kotra, 2024)

- (기타 서비스) 일본 내에서 노견 요양원 자택방문형 데이케어 서비스도 있음
- 일반적인 경우 기본 요금(1시간 3000엔 수준)에 각종 요양서비스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노령견 건강상담 등 어드바이스를 제공함(한국애견신문, 2023)
-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펫케이션’에 대응하는 호텔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약 사이트 Hotels.com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검색 중 ‘반려동물 가능’을 검색한 비율은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함
- 또한 펫케이션 관련 비즈니스로 펫시터 사업을 추진하는 애니스피 홀딩스는 2021년 11월부터 제휴처 호텔에 동물 간호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Kotra, 2024)

2) 일본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현황

□ 일본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은 최근 다방면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규제의 정도와 법적 처벌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입양) 생후 8주 미만의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일본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은 펫숍과 입양 보호소를 통한 방법이 있음
 - 보호소에 들어본 반려동물은 버려지거나 구조된 동물로 건강 상태와 입양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수행하여 대부분 중성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입양과정은 보호소에 따라 상이하지만 표준화된 형식이 있음
 - 입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양 희망자의 생활공간과 생활방식이 반려동물에게 적합하지 확인하기 위해 집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
 - 또한 인터뷰를 통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질문을 진행하며 가족 규모와 가족 수에 대한 정보도 요청함
 - 보호소에 따라서 거주지를 직접 점검하기도 하며 안전한 주거공간에 대한 확인이 마무리되면 입양절차가 진행됨(Tsunagu Local, 2021)
 - 입양 시 가족 전부가 함께 확인받아야 하며 누구라도 반대하면 입양이 불가능함(경

주신문, 2024)

- (등록) 일본에서는 2019년 6월의 법 개정에서는 다음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Peace Wanko Japan, 2023)
- 반려동물 중 개는 크기에 상관없이 생후 91일 지난 개를 키우거나 입양하면 지역 구청 및 보건소에 등록해야 함
- 등록에는 약 3,000엔이 필요하며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30일 이내 등록해야 함
-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고유의 라이선스 태그를 받게 되며 명찰, 다리고리, 내장칩, DNA감정 중에서 1개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유기견 및 유실견 예방을 위해 내장칩 등록 방식이 선호되고 확대되고 있음
- 태그 착용 시 개에 부착해야 하고 이사와 같이 등록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새 주소로 변경해야 함(Tsunagu Local, 2021)
- 고양이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 됨(경주신문, 2024)
- 또한 개의 경우 지방정부가 매년 4~6월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비용은 3,650 엔으로 접종 후 확인 증명서가 발급 후 개의 목걸이에 부착해야 함(Tsunagu Local, 2021)
- 산책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산책 시 생수통과 변처리 봉투를 준비해야 하며 대소변 이후 물을 부어 흔적을 없애야 함
- 또한 대형견의 경우 일정 시기부터 사회화 교육을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함(경주신문, 2024)
- (시설) 일본 도쿄 미나토구 정비안의 경우 보호시설의 크기가 최소 500m² 이상, 일반적으로 1,000m² 이상을 권장하고 있음(Auri 건축공간연구원, 2023)
- 또한 시설관리에 있어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기록해야 함
- 개와 고양이의 케이지는 크기에 따라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철망 바닥재는 사용할 수 없음
- 시설 내 관리자는 개 20마리당 1인 고양이 30마리당 1인이 책임지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大阪府, 2024; 東京都保健医療局, 2024)

○ 일본의 반려동물 복지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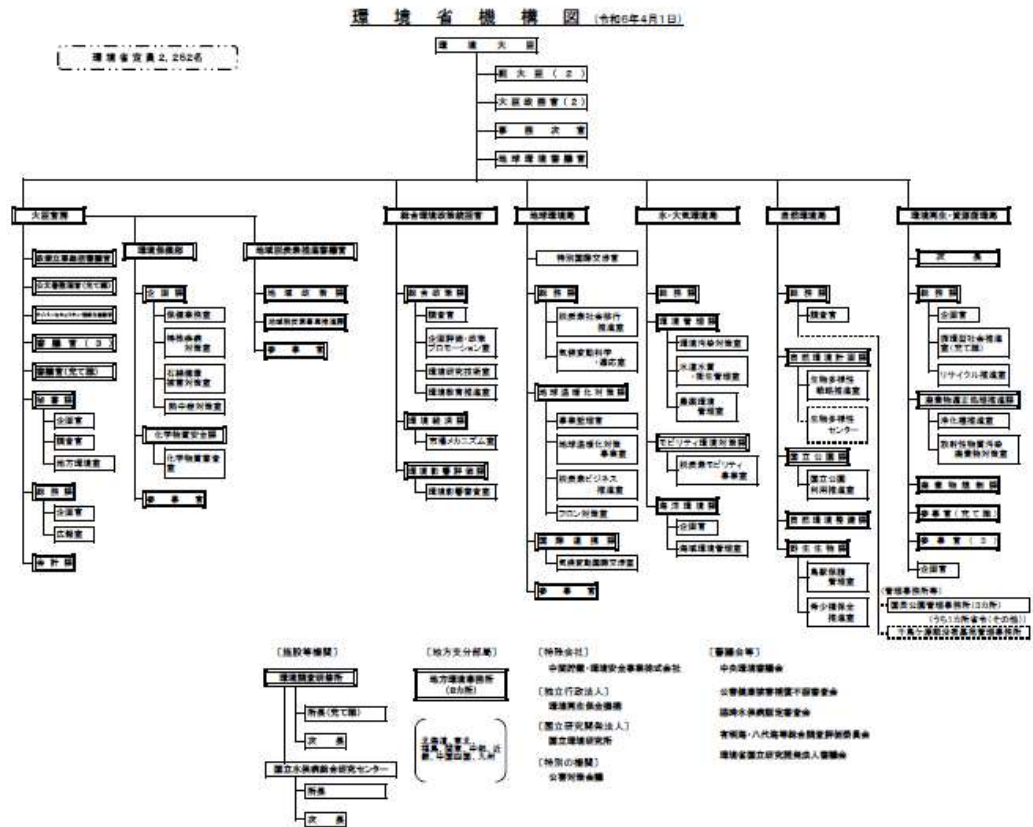
- (유기보호) 마스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개 고양이의 총수는 추계 1833만 마리
로, 그 중 주인이 없는 개 고양이는 약 228만 마리로 보호견 2만7600마리, 야라견
2만4900마리, 보호고양이 4만4800마리, 야라고양이 218만 마리로 집계됨
- 개 고양이의 총수에 차지하는 주인이 없는 개 고양이의 비율은 일본은 12%로 세
계 평균의 35%를 크게 밑돌고 있음(Sippo, 2024)
- 일본은 개와 고양이를 포함해 미등록 시 벌금 175만 원(20만 엔), 유기 시 1년 이
하 징역에 870만 원(100만 엔) 이하 벌금이 있음(경인방송, 2024)
- (안락사) 일본 내 안락사는 많이 줄었지만 연간 약 10만 마리의 개·고양이들의 안
락사가 진행되고 있음(Qrasippo, 2024)
- 일본의 보건소에 수용되어 있는 개나 고양이는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수용 가능
한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 수를 제한하고 있어 약 10만 마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5만 마리는 생후 1년과 살지 않고 개인실에 갇혀 이산화탄소를 주입
한 개인실에서 질식사하고 있음(Peace Wanko Japan, 2023)
- 보호 기간 내에 인수자가 발견되지 않은 개나 고양이, 또 병이나 공격성이 있는 등
양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살처분의 대상이 됨(Peace Wanko Japan,
2023)

□ 반려동물 복지 담당 조직 및 기능

○ 일본의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복지 관련 정책은 환경성(Ministry of the En vironment)에서 「동물복지및관리에관한법률(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 律)」에 근거하여 총괄함

- 환경성에서 동물복지 정책은 자연환경국(自然環境局) 총무과 산하의 동물복지및관리실
(Animal Welfare and Management Office)에서 담당함
- 자연환경국은 각 지역에 따른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 국제 시책의 추진 등을 담당함
- 동물복지및관리에관한법률은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동물의 적절한 취급, 동물의
건강 및 안전 유지 등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음(제1조)
- 환경성은 동물복지 교육 인식제고(제3조와 제4조), 동물복지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의 마련(제5조), 반려동물의 등록(반려견과 반려묘)(제39조의5),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지정등록기관 지정(제39조의 10)과 지정의 취소(39조의 20)등의 책임과 권한을 지님



<출처> 환경성 홈페이지

<그림 20> 일본 환경성 조직도

○ 지방 정부(도도부현)은 기본지침에 따라 도도부현 지역의 동물복지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도부현 지사는 는 동물의 복지 및 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기본 방침, 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보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재해 발생 시 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보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동물의 복지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확립 실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6조)

— 또한 관련 업체의 관리, 업체의 기준 미준수 시 필요 조치에 대한 권고(제23조)를 할 수 있음

- 더불어 주변환경이 동물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경우 그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게 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도도부현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동물복지 관련 시설을 운영하기도 함
 - 예를 들어 일본 도쿄에 위치한 동물애호상담센터는 도쿄도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로 동물보호 및 관리, 교육홍보, 동물취급업 관리, 길거리 고양이 공생사업 추진,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조사를 시행함
- 일본의 근거법은 소유자 등에 대한 기소권, 조사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비정부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

○ 일본의 주요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활동

- 일본의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복지 관련 비영리 단체는 일본동물복지협회(日本動物福祉協會), 동물권리센터(Animal Rights Center, 이하 ARC), 도쿄휴메인소사이어티(Tokyo Humane Society), 개와고양이고아구조대(犬猫子救助隊)가 있음
- 이중 개와고양이고아구조대는 1990년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개인모임에서 시작하여 2005년 비영리단체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음
- 현재는 개와 고양이의 평생사육을 목표로 600마리의 유기묘를 수요하고 있음
-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 개와 고양이를 인수하여 평생사육하며, 이 외에도 입양 추진, 중성화 등의 지역고양이사업, 연극 및 강연 교육, 고령자 대상 반려동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재원은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고양이사업 추진

5. 소결

1) 독일의 반려동물 현황 요약 및 소결

- 독일은 반려동물과의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독일의 반려동물은 2023년 기준 총 3,430만 마리로 전체 가구의 45%가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체 수는 고양이는 1,570만 마리, 개가 1,050만 마리로 고양이, 개, 토끼(작은동물), 관상어의 순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33%는 집과 회사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였음
 - 독일 내 입양은 브리드를 통한 입양,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며 양육 시 개의 경우 한 달에 90~100유로, 고양이는 약 60~80유로 정도 비용이 발생함
 - 장례비용은 매장과 화장에 따라 다르며 반려동물 보험은 건강보험과 책임보험으로 구분되어 있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지역도 있음
 - 독일 내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료시장의 경우 2023년 약 45억 유로로 2024년에는 69억 1천만 달러, 2029년에는 84억 달러로 추산되며 온라인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felmo) 시장 보험시장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보임
 - 독일에서의 반려동물 입양절차는 까다로우며 등록절차도 등록번호를 내장칩 혹은 문신으로 표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함
 - 양육에 있어 소음이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유기 시 1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며 유기동물 안락사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함
- 독일은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지역,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독일의 반려동물복지 정책은 연방정부인 BMEL, BMEL의 산하기관이자 독립된 행정청인 BVL, 연방의 주 정부들, 비정부 및 민간 단체들의 고유 기능 수행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추진되고 있음
- BMEL은 독일의 동물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연방부처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정책 개발, 법률 준수여부의 감독, 연구 및 교육 지원을 담당함
- 연방 주 정부는 동물보호소의 운영, 반려동물 등록 및 세금 부과 등을 통해 지역별로 정책을 집행하고 이 과정에 비영리 단체들 예를 들어 독일동물보호연맹이나 TASSO 등과 협력하여 보호소 운용 지원 및 반려동물 시스템 운영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2) 영국의 반려동물 현황요약 및 소결

- 영국은 소유자를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사람들의 의무가 법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해 가고 있음
- 영국 가구(1,620만 가구) 중 약 57%가 3,8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으며 개는 1,350만 마리, 고양이는 1,250만 마리로 나타남
- 영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반려동물은 개(31%), 고양이(26%), 토끼(2.8%), 새(2.3%), 햄스터 등 순으로 양육에 있어 동물을 위한 방이나 정원에 공간을 두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입양비는 품종에 따라 다르며 양육비는 반려견이 연간 약 100억 파운드, 고양이 약 80억 파운드가 필요함
- 장례비용과 보험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은 반려동물의 종류, 크기, 방식에 따라 장례업체 별로 상이함
- 영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매우 크며 사료 시장은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음
- 최근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으로 프리미엄 사료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 구독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음
- 영국 내에서 펫테크(pet tech)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 펫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등장하고 있음
- 영국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을 갖춘 ‘브리더

- (breeder)'에게 분양받거나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음
- 반려견은 생후 8주전 고양이 20주 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등록해야 함
-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위생적이고 프라이빗한 시설이 중요함
- 그리고 영국에서 매년 4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동물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있음
- 영국 내 유기 반려동물이 수가 가계비용의 급등으로 동물복지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유기견 발견 시 법적 책임은 지방 자치 단체에 7일 동안 머물며 그 후 의회는 개를 판매, 기부 또는 안락사로 처분할 수 있음
- 영국의 법적으로 소유자를 비롯한 동물복지의 실질적인 책임자의 법적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대비하여 구체적인 기소방식과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는 DEFRA에서 총괄하며, 동물복지법에 근거한 규정과 실무 지침을 제정해 시행함
- DEFRA 산하의 APHA는 동물 사육, 운송, 도축 등의 복지 기준 준수를 감독함
- 지방정부는 동물복지법에 따른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집행하고 소유자를 비롯한 책임자가 동물복지법 제9조에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잉글랜드와 웨일스 한정)
- 비영리 단체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RSPCA는 동물복지조사관 제도를 통해 동물 학대 중지, 구조, 법 위반자 기소 등을 수행함
- 2015년부터 도입된 마이크로칩 이식에 따른 데이터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접근 규정을 준수하도록 DEFRA가 승인 및 감독 권한을 가짐

3) 미국의 반려동물 현황 요약 및 소결

- 반려동물 산업분야도 다양한 부분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사료뿐만 아니라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고 동물건강과 관련하여 보험이나 원격진료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미국의 반려동물 가구는 약 66%(8,690만)로 개체 수는 개와 고양이

두 종 가장 많으며 가장 선호하는 반려동물은 개 6510만 명, 고양이가 4650만 명, 민물고기 1100만 명, 작은 동물 670만 명, 새 610만 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의 양육은 집에서 하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도심을 벗어나 주거 공간이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입양은 구조센터나 보호소에서 입양하며 반려동물에게 연간 평균 741 달러를 지출하는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험으로 나타남
- 장례 방법은 화장방법과 묘비방식이 있으며 선택사항과 주별로 상이함
- 미국 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은 2024년 80.69십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5.06% 성장하여 2029년에는 103.27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그리고 미국 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온라인 소매 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2023년 52억 9,630만 달러로 2032년까지 시장규모가 87억 300만 달러로 예측됨
-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사료추천 서비스인 정기 배송 서비스 (구독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음
-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동물건강 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동물 수의학 진료의 약 30%가 원격 의료를 진행하고 있음
-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하여 2022년 기준 보험 가입 반려동물은 약 485만 마리로 반려동물 중 약 45%가 펫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미국 내에서 입양하기 위해서는 브리더를 통해 입양하는 방법과 가정견 입양, 구조센터나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방법이 있으며 절차가 까다로운 편으로 나타남
- 입양한 후에는 등록소를 선정하고 신청서 제출하면 약 3주 후에 받을 수 있으며 해마다 정보를 갱신해야 함
- 양육에 있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필수이며 항상 목줄이나 하네스에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고 길고양이는 불임수술을 받고 마이크로칩을 이식받아야 함
- 또한 가정에서 한 가구당 4마리의 개와 4마리의 고양이를 초과할 수 없음
- 2023년 미국 내 보호소 유기동물의 개체 수가 22% 증가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증가가 가장 큰 이유로 보임
- 또한 미국 내 보호소에서는 매년 92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안락사되고 있음

○ 미국은 주 정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연방주가 최소한의 사육 관리 의무에 대한 주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로 인해 주 간 복지 수준의 편차가 있음

— 연방 정부 산하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은 농무부와 산하의 APHIS로 이들은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의 시행을 총괄함

— 주 정부는 연방 법과 별도로 주 법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또한 정하고 있음

— 다만 주 별로 정책의 통일성이 없어 각 주의 규정과 집행 내용을 상이함

— 비정부 및 민간단체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중 ASPCA와 같은 단체는 뉴욕 경찰과 협력하여 동물 학대 방지 및 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4) 일본의 반려동물 현황 요약 및 소결

○ 일본은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며, 경제적 여유를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반려동물 학대 등 복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고발이나 기소, 조사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일본 내 반려동물의 수는 2008년 1300만 마리를 시작으로 2022년에 1600만 마리로 줄었음

— 개체 수는 개가 약 705만 3천 마리, 고양이는 약 883만 7천 마리로 합쳐서 1,589만 마리로 감소되었음

— 감소한 이유로는 △인구 고령화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좁은 주택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불리한 환경 때문으로 나타남

—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개 11.6%, 고양이 9.6%로, 민물고기 4.8%, 새 1.6% 거북이 1.5%, 등 순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제약 조건이 까다로우며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빌라는 반려동물의 양육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검증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함

— 일본 내 입양비는 보호소마다 다르지만 평균 15,000엔~ 20,000엔이며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에 대한 연간 지출액은 2022년 기준 개 357,353엔, 고양이 160,766엔으로 먹이 관련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지방자치단체(청소국, 환경위생국, 위생국 등 지역에 따라 다름)에 연락하여 인수받는 방법과 민간 애완동물 장의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본의 반려동물의 보험은 정률 보상, 정액 보상, 실비 보상 등 3종류의 보상 타입이 있음
- 일본의 반려동물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반려동물 분양을 포함한 전체 시장의 규모는 소매액 기준 전년도 대비 1조 7,542억엔, 2023년 1조 8,629억엔, 2024년의 1조 9,026억엔으로 예측하고 있음
- 반려동물산업시장 확대는 물가인상 외에도 반려동물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남
- 일본의 사료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5.58억 달러, 2029년 6.84억 달러로 추산되며 휴먼 그레이트(Human Grade) 제품, 국산 원료 사용이나 보존료, 착색료, 향미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수의사와 공동개발이나 감수한 제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또한 반려동물과 기술을 합친 반려동물 테크(Pet-Tech), 미용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반려동물의 고령화로 보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노견 요양원 자택방문형태의 데이 케어 서비스와 휴가를 보내는 ‘펫케이션’에 대응하는 호텔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은 펫숍과 입양 보호소를 통한 방법이 있으며 입양과정은 보호소에 따라 상이하지만 표준화된 형식이 있음
- 입양 시 가족 전부가 함께 확인받아야 하며 누구라도 반대하면 입양이 불가능함
- 등록은 생후 91일 지난 개를 키우거나 입양하면 지역 구청 및 보건소에 등록 30일 이내 등록해야 하고 이후 고유의 라이선스 태그를 받게 되며 명찰, 다리고리, 내장칩, DNA감정 중에서 1개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함
- 고양이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되었음
- 그리고 개의 경우 지방정부가 매년 4~6월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견의 경우 일정 시기부터 사회화 교육을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함
- 일본의 유기동물 중 개 고양이의 총수는 추계 1833만 마리로, 미등록 시 벌금 175

만 원(20만 엔), 유기 시 1년 이하 징역에 870만 원(10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함

○ 일본은 환경성의 자연환경국의 총무과에서 총괄하여 동물복지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 학대 방지, 적절한 취급, 건강 유지 등을 규정함

— 지방정부(도도부현)는 기본지침에 따라 지역 동물복지 계획을 구립하고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등 동물 복지 및 관리 조치를 이행함

— 비영리단체들은 유기동물 보호, 입양, 중성화 사업 등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Ⅲ. 동물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기능 효율화 방안

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정책

1) 중앙정부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빠르게 전환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정책은 동물보호법에 기반한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에 근거하며, 총괄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위원회,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동물복지정책과)에 맡기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위원회는 제반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복지 정책 체계

○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관리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②항: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 ③항: 동물보호활동에 대한 지원,

— ④항: 동물보호교육,

— ⑤항: ④항에 따른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제2장과 제3장은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복지위원회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
- 시·도 단위에서 동물복지계획수립은 의무적이지만,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은 재량사항임

— 적정한 사육 및 관리, 동물학대 금지

- 제10조에서 규정된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안에 따라 형벌(징역형,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수명령의 병과, 과태료를 부과함

— 동물등록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 업무내용과 자격시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에 대해 규정

— 동물의 구조 및 보호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 재량사항이지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동물의 기증·분양,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동물보호법 제6장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 영업(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동물장묘시설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7장은 출입·검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출입·검사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 ✓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 ✓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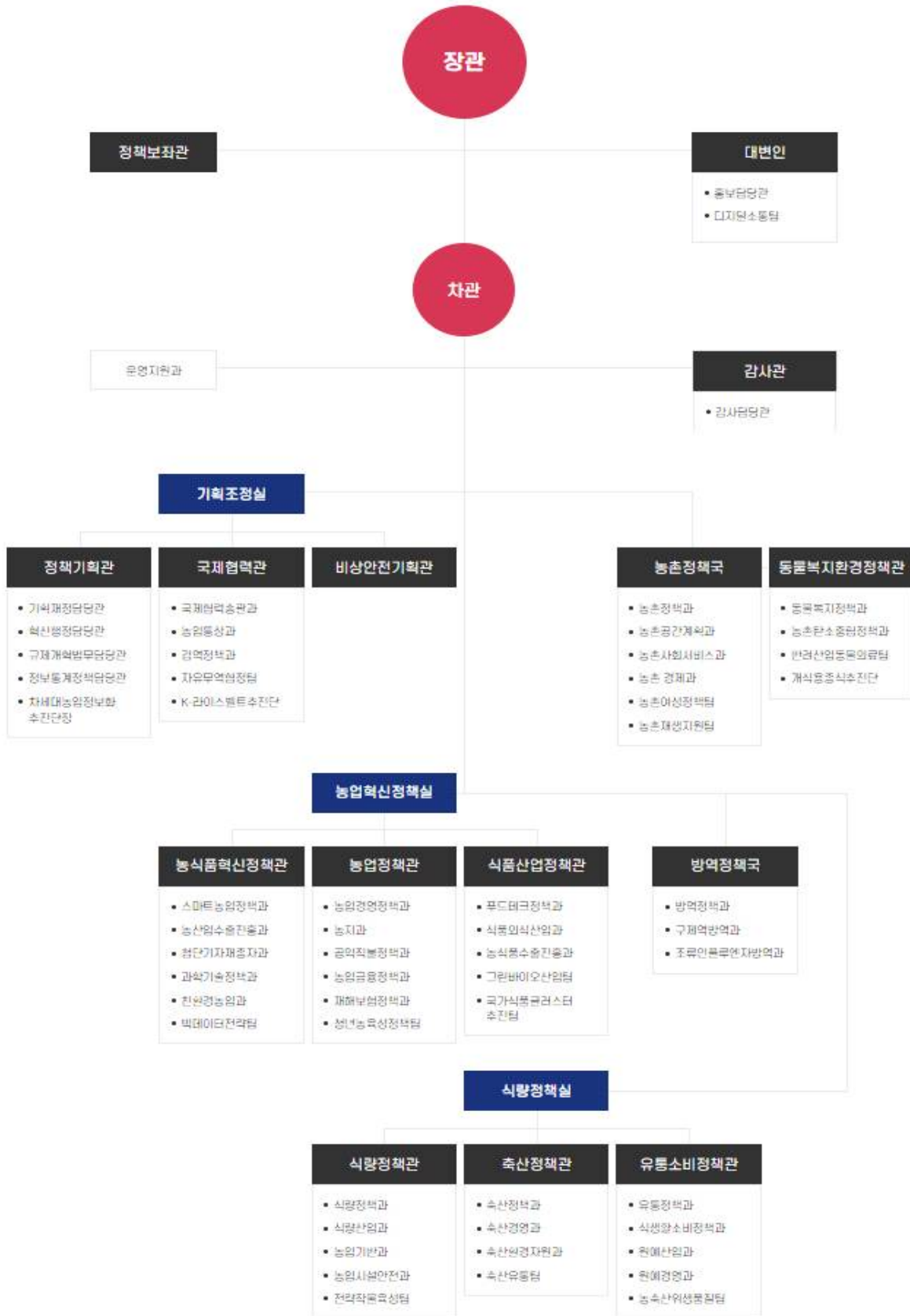
— 동물보호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함
- 동물보호관이 상기 내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 시 동법 제101조 3항26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동물보호법 제8장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복지 관련 중앙 정부 조직 체계



<그림 2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 우리나라 동물복지 관련 중앙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며 구체적으로는 14개 국 관 중 2022년 12월 신설 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에서 담당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으로 집행되는 동물복지 정책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
- 지방정부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집행하며, 동물보호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함

④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의 인력과 예산

① 인력

| 구 분 | 계 | 고위공무원 | 34~4급 | 45~5급 | 6~8급 |
|-----------|----|-------|-------|-------|------|
| 계 | 43 | 1 | 2 | 14 | 16 |
| 동물복지정책과 | 13 | 1 | 2 | 4 | 6 |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11 | - | 1 | 4 | 6 |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9 | - | - | 6 | 3 |
| 개식용종식추진단 | 10 | - | 1 | 4 | 5 |

<표 1> 인력 현황

② 예산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3예산 (A) | '24예산 (B) | 증감 | | 비고 |
|--------------------------|---------------|---------------|----------------|--------------|----|
| | | | (B-A) | % | |
| 【 합 계 】 | 51,219 | 44,309 | △6,910 | 13.5 | |
| <동물복지정책과> | 19,369 | 18,555 | △814 | △4.2 | |
| 동물보호 안전관리 강화 | 12,328 | 12,532 | 204 | 1.7 | 농특 |
|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제주) | 7,041 | 6,023 | △1,018 | △14.5 | 균특 |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400 | 5,650 | 5,250 | 83.1 | |
| 반려동물산업육성 | 400 | 3,810 | 3,410 | 852.5 | 농특 |
|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 - | 1,840 | 1,840 | 순증 | " |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31,450 | 20,104 | △11,346 | △36.1 | |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 18,000 | 7,660 | △10,340 | △57.4 | 일반 |
|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 5,821 | 6,251 | 430 | 7.4 | 농특 |
| 기후변화실태조사 | 1,352 | 1,583 | 231 | 17.1 | " |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 4,142 | 2,816 | △1,326 | △32.0 | " |
|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 | 2,135 | 1,794 | △341 | △16.0 | " |

<표 2> 예산 현황

② 그 외 반려동물 정책 및 동물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의 현황

① 대상동물 유형별 동물보호·복지계획 및 감독 기능 추진체계

| 구분 | 관련 기관 및 업무기능 | | | | |
|---------------------------------|--------------|---------------------------------------------------------------|-------------------------------------------------------------|--------------------------------------|------------------------------|
| | 정부부처 | | 공공기관 | 지자체 | |
| | 중앙기관 | 소속기관 | | | |
| 동물 보호 복지 계획 및 감독 | 전체동물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보호복지 정책 기획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 - | - | ·동물보호복지 정책 기획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
| | 반려동물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동물 의료체계 관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영양/사료 연구 | - | - |
| | 농장동물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농장동물 복지 정책 기획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 기획·운영 | [축산과학원] ·농장동물 동물복지 연구 |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 - |
| | 실험동물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실험동물 보호·관리 정책 기획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제도 운영 및 동물복지 연구 | [실험동물협회] ·식약처 업무지원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법·제도 개선 | | | |
| | 야생동물 |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정책 기획 ·야생동물 국제협력관리 |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증식·복원 관련 연구 | - |
| 동물원 | | [환경부] ·동물원 정책 기획 | | - | - |

<표 3> 대상동물 유형별 동물보호·복지계획 및 감독 기능 추진체계

② 대상동물유형별 동물 보호 및 관리 기능 추진체계

| 구분 | 관련 기관 및 업무기능 | | | | |
|----------------|--------------|-------------------------------------------|------------------------------------------|------------------------------------------------------------------------|---------------------|
| | 정부부처 | | 공공기관 | 지자체 | |
| | 중앙기관 | 소속기관 | | | |
| 동물 영업 관리 | 반려 동물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반려동물 영업·산업 관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 및 교육 계획 관리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반려동물 영업시설 등 전수조사 ·지자체동물보호센터 보호여건조사 ·동물복지 홍보관리 | ·동물영업 인허가 관리, 점검·지도 |

| 구분 | 관련 기관 및 업무기능 | | | |
|------|----------------------|-------------------------------|-----------------------------------------|--------------------|
| | 정부부처 | | 공공기관 | 지자체 |
| | 중앙기관 | 소속기관 | | |
| 농장동물 | |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가축운송도축 등 관리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농장 등 동물복지 수준 실태조사 | ·축산업 인허가 관리, 점검·지도 |
| | 실험동물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시행기관 점검·관리 | - | - |
| 야생동물 | [환경부] ·야생동물 포획 관리 | | - | ·야생동물 포획 관리 |
| 동물원 | [환경부] ·동물원 등록관리 | | - | ·동물원 등록 관리 지도점검 |

<표 4> 대상동물유형별 동물보호 및 관리 기능 추진체계

③ 대상동물유형별 동물 영업 관리 기능 추진체계

| 구분 | 관련 기관 및 업무기능 | | | | |
|-----------|---------------|----------------------------------------------------------------------------------------------------------------------------------------|------------------------------------------------------------------------------------------------------|-------------------------------------------------------------------------------------------------------------------------------------------------------------|----------------------------------------------------------------------------------------------------------------------------------------------------------------------------------------------------------------------------------------------------------------------------|
| | 정부부처 | | 공공기관 | 지자체 | |
| | 중앙기관 | 소속기관 | | | |
| 동물보호 및 관리 | 반려 동물 / 농장 동물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제 관리 ·동물안전관리(기질평가) ·동물보호 및 관리(입양지원, 유실유기 등) ·동물보호센터 관리 ·동물보호복지 정책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지정·관리 ·동물보호관 출발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계 관리 ·질병관리 ·동물등록, 무선신호발송장치 관리 및 동물등록제도 운영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출제도 운영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보호복지 교육관리 및 동물보호복지온라인 시스템 관리 ·동물보호복지 홍보관리 ·동물보호복지 콜센터 운영 ·동물보호복지 대대외협력, 국민의식조사 ·고양이 중성화수술 효과성 분석 ·재난상황발생 대비요령 가이드라인 마련 | ·동물등록 신고·변경 등 등 록사항 기록 관리 ·반려동물 영업허가관리(생 산·수입·판매·장모) ·반려동물 영업등록 관리(전 시·위탁관리·미용·운송) ·동물복지시설 구축·운영 ·맹견 사육 허가 및 관리 ·동물안전관리(기질평가 수행) ·동물보호법 위반 감시·조 치 ·동물보호관, 명예동물보호 관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관 리 ·동물보호센터(지특사업), 입양비,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등 ·동물 질병 관리 ·동물위생시험소 |
| | 실험동물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실험 관리 제도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운 ·동물실험시행기관 지도감독, 실태 조사 ·위원회 위원 및 전임수의사 관리 | - | - |
| | 야생동물 동물원 | [환경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 ·야생동물보호원, 명예야생동물보호원 ·야생동물 질병 관리 ·야생동물 보전관리 ·야생동물 유해 야생동물 관리 | | [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관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증 식, 복원 관련 평가·분석 | ·야생동물 구조·포획 관리 ·야생동물보호원, 명예야생동물보호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야생동물 질병 관리 |

<표 5> 대상동물유형별 동물영업 관리 기능 추진체계

㉔ 광역지자체 반려동물 정책 및 동물복지 정책 담당 조직, 예산 인력, 주요정책현황

① 지자체 담당 조직

- 지자체 동물복지 인력은 총 694명, 전담인원* 기준 총 486명으로, 기초 지자체 (228개소) 한 곳당 약 1.8명 수준('22년 기준)

- 1명이 동물복지 외 타업무 수행 시 그 업무비중 제외 (예: 동물복지 0.5 축산 0.5 → 0.5명)

② 지자체 인력

- 전담부서 현황(“동물복지과” 등) : (광역) 11/17개 시도, (기초) 84/228개 시군구
— 가축방역, 축산업 인허가, 축산물위생 등 기타 다른 동물관련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가 상당수 임

2) 지자체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빠르게 전환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체적인 반려동물 정책 집행 방침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분석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site검색 시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기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24), 부산(16), 광주(6), 대구(7), 대전(6), 세종(1), 울산(5), 인천(9), 강원도(12), 경기도(28), 경상북도(9), 경상남도(15), 전라남도(17), 전라북도(9), 충청남도(11), 충청북도(7), 제주도(1)이며, 이 중 개별 지자체가 2개 이상의 관련 추가조례를 규정한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 198개 조례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검색된 조례 중 “야생동물”, “서식공간”, “유해조수”등 반려동물과 관련없는 조례는 제외함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통합 분석

— 198개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조례명, 제정일, 개정횟수, 조항 수, 담당부서명,

조항의 성격(의무 vs 재량)을 조사하였으며, 조항의 주요내용에 대한 카테고리화를 수행함

| 조항성격(의무) | 빈도(개) | 비율(%) | 조항성격(의무) | 빈도(개) | 비율(%) |
|----------------|-------|-------|----------------|-------|-------|
| 동물 구조, 보호 등 | 151 | 76% | 다중이용시설 출입 지원 | 7 | 4% |
| 동물 보호 및 관리 | 81 | 41% | 동물 분양,기증 | 26 | 13% |
| 동물 등록 등 | 109 | 55% | 동물보호감시원 | 43 | 22% |
| 동물보호관 | 2 | 1%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 59 | 30% |
| 길고양이 관리 | 61 | 31%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 59 | 30% |
| 동물보호센터 감독 | 98 | 49% | 동물보호센터 등 설치,운영 | 115 | 58% |
|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 4 | 2% | 동물보호업무 경비 지원 | 60 | 30% |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 83 | 42% | 협력체계 구축 | 31 | 16% |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 4 | 2% | 교육 및 홍보 등 | 32 | 16% |
| 맹견 관리 | 45 | 23% | 동물복지 시설 관련 | 43 | 22% |
| 출입,검사 등 | 32 | 16% | 동물 생명,문화 관련 | 45 | 23% |
| | | | 기타 | 8 | 4% |

<표 6> 동물복지 관련 조례의 주요 조항 구분

- 담당부서(조례 규정 상)

| 구분 | 부서명 |
|-------|------------------------------------------------------------------------------------------------------------------------------------------------------------------------------------------------------------------------------------|
| 경제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과, 경제녹지과, 경제복지국 기후환경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국 농산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지원팀, 경제정책과, 경제지원과, 경제진흥과, 도심산업과, 민생경제과, 산업지원과, 시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벤처과, 지역경제과, 지역산업과 |
| 환경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환경과, 환경축산과 |
| 농업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과,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농축산과, 축산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국 축산과, 농업축산과, 농업축산위생과, 농정과, 농정축산과, 농축산과, 농축산유통과, 농축산정책과, 농축수산물과, 도시농업과, 생명농업과, 유통축산과, 축산식품과, 축산원예과, 축산지원과, 축산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축수산물과 |
| 동물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동물관리과, 동물농축산계, 동물보호과, 동물보호팀, 동물복지과, 동물자원과, 동물정책과, 동물정책팀, 동물축산과, 반려동물과, 반려동물팀 |
| 위생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관리과, 동물방역과, 동물방역위생과,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과, 식품위생농업과, 위생정책과, 동물방역팀, 농업축산위생과, 질병관리과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물과 |

<표 7> 동물복지 관련 지자체 담당부서(조례 규정상)

□ 조례 조항의 주요 내용 분석(의무적 성격)

—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지자체 장 혹은 기관에게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규정들을 분석하였음

○ “동물 등록 등”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의 등록 등”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109개로 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¹³⁾

— (내용)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지자체의 장(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함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 및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함
- (소유자의 준수 사항)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사육 및 동반 출입 금지,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의 수거

○ “동물의 구조 및 보호”와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의 구조 및 보호”와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151개로 7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¹⁴⁾

— (내용) 지자체의 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구조 시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구조한 동물은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단체,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일로부

13)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제7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14)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0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적 성격의 조항이 존재하지만,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하여 벌칙이나 강제조항은 없음

○ “동물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81개로 4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¹⁵⁾
- (내용) 지자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된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유기동물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함
 - ✓ 유기동물보호담당자: 동물보호 또는 동물관련 분야 전공자,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사로 하여금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함. 이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센터의 감독”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4개로 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¹⁶⁾
- (내용) 동물보호법 제3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조제2항에 의하면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과반수(58%) 지자체 조례들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은 재량적 성격을 띠고 있음
 - 평택시,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음
 - ✓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동물보호센터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함. 다만, 임시 보

15)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구조된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16) 동 내용은 경기도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호 시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음

○ “동물보호센터의 감독”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센터의 감독”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98개로 4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¹⁷⁾
- (내용)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 (지정 취소 사유)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동물학대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동물보호관”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관”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2개로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¹⁸⁾
- (내용) 지자체장(도지사,군수)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함
 - 누그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보호관의 직무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83개로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¹⁹⁾. 이 중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수는 총 42개로 절반 수준임
- (내용) 지자체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5년 단위로 규정된 경우 있음.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적으로 규정된 경우, 이에 대한 결과가 동물복지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포함 사항)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

17)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감독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18) 동 내용은 경기도 동물보호조례 제22조의2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참조함

19)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4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리에 관한 사항,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4개로 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²⁰⁾

— (내용)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

- (자문사항)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사항, 동물의 학대 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 “맹견 관리”와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맹견 관리”와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45개로 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²¹⁾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음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맹견의 소유자등은 특정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 특정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의료기관 등

○ “출입·검사 등”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출입·검사 등”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32개로 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²²⁾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동물의 소유등 및 다음 각 호의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20) 동 내용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제3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1)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7조의2.3을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맹견 관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2)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3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출입·검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영업자: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지자체의 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은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조례 조항의 주요 내용 분석(재량적 성격)

—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지자체 장 혹은 기관에게 재량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규정들을 분석하였음

○ “다중이용시설 출입 지원”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다중이용시설 출입 지원”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7개로 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²³⁾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지자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지자체의 장은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음

○ “동물 분양·기증”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 분양·기증”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26개로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²⁴⁾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동물보호법제43조에 따라 유실동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상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음

- 이 때, 분양·기증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동물보호 민간단체 또

23)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7조의4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4) 동 내용은 경기도 성남시 동물보호조례 제27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의 분양·기증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기증할 수 있음

- 분양·기증 시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기증해야 함
-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동물보호감시원 등”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명예동물보호관”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43개로 2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²⁵⁾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동물학대 방지, 동물보호 등과 관련된 지도·계몽활동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음

- (직무내용)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지자체의 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59개로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²⁶⁾. 이 중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 규정하고 있는 건수는 총 26개로 44% 수준임

— (내용) 조항의 주요 내용 중 의무적 성격을 띄고 있는 규정에서의 분석 내용과 동일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59개로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²⁷⁾

— (내용) 조항의 주요 내용 중 의무적 성격을 띄고 있는 규정에서의 분석 내용과 동일

25) 동 내용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 제25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보호감시원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6) 동 내용은 강원도 동해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7)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115개로 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²⁸⁾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지정할 수 있음
 -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함. 또한 그 내용을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함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동물보호업무 경비지원”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업무 경비 지원”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60개로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²⁹⁾
- (내용) 지자체의 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 반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31개로 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³⁰⁾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28)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9)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5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30)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23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 및 홍보 등”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교육 및 홍보 등”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32개로 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³¹⁾
- (내용) 지자체의 장은 어린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육 및 홍보 사항)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산책을 통한 행동교정·훈련 및 펫티켓 교육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법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

○ 기타 규정

| 개요 | 내용 | 건수 (개) | 비율 |
|-------------|-------------------------------------------------------------------------------------------------------------------------------------------------------------------------------------------------------------------------------------------------------------------------------------------------------------------------------------------------------------------------------------------------------------------------------------------------------------------------------------------------------------------------------------------------------------------------------|-----------|-----|
| 동물 복지 시설 관련 | (동물복지지원센터) ³²⁾ - 수행기능: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보호·분양,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동물보호 시민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동물 의료 지원, 동물보호정책의 연구 및 기획,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등 (반려견 놀이터) ³³⁾ - 지자체의 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반려동물장묘시설) ³⁴⁾ - 지자체의 장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동물분양센터) ³⁵⁾ -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분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반려동물 문화센터) ³⁶⁾ - 반려동물 문화공간 등의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³⁷⁾ | 43 | 22% |

31)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 제21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32)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 참조

| | | | |
|-------------|-------------------------------------------------------------------------------------------------------------------------------------------------------------------------------------------------------------------------------------------------------------------------------------------------------------------------------------------------------------------------------------------------------------------------------------------------------------------------------------------------------|----|-----|
| | -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동물 등의 진료를 위하여 관내에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 |
| 동물 생명·문화 관련 | <p>(동물생명존중헌장)³⁸⁾</p> <p>-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선포</p> <p>(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 조성)³⁹⁾</p> <p>-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반려동물 문화·체육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함</p> <p>(동물고감치유 활성화)⁴⁰⁾</p> <p>- 동물고감치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관련 협의체 구성 및 회의, 홍보·협약 및 행사, 자문·연구·학술모임·학회활동 등)</p> <p>(동물의 인도적인 처리)⁴¹⁾</p> <p>- 인도적인 처리 상황: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p> | 45 | 23% |
| 기타 | <p>(사육포기 동물의 인수)⁴²⁾</p> <p>- 소유자 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p> <p>(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⁴³⁾</p> <p>- 사회적 약자(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노력</p> <p>-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상해·폐사 등으로 인한 주민에게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사육자의 심리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음</p> <p>(반려견 보험의 가입)⁴⁴⁾</p> <p>-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p> | 8 | 4% |

<표 8> 기타 규정

33) 서울시 강남구 동물보호조례 제9조 참조

34) 대전시 동물보호조례 제17조2 참조

35) 서울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제22조 참조

36) 울산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참조

37) 경기도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참조

38)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2조 참조

39) 서울시 영등포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6조 참조

40) 경기도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9조 참조

41) 전라북도 임실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참조

42) 부산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8조 참조

43) 광주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제7조 참조

2. 각국의 반려동물 조직 및 기능 간의 비교를 통한 조직 기능 효율화 방안 도출

□ 주요국 반려동물 조직 및 기능 비교

○ 해외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조직 기능을 비교한 결과 통상적으로 중앙의 주무부처는 정책 수립의 기능을, 지방정부는 정책 집행의 기능을 담당

— 우리나라 또한 독일 등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주무부처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령을 기반으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총괄 관리를 수립하고 관련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국의 동물복지법 등 관련법은 이러한 주무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는 주무부처에서 수립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 비영리기관의 역할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독일과 영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와 정부 간의 다양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예산 일부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비영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반려동물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하여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등의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비영리단체인 RSPCA와 협력하여 동물복지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44) 경기도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참조

| 국가 | 한국 | 독일 | 영국 | 미국 | 일본 |
|----------------------|-----------------------------------------------------------------------------------------------------------------------------------------------------------------|--------------------------------------------------------------------------------------------------------------------------|-------------------------------------------------------------------------------------------------------------------------------------------------------|------------------------------------------------------------------------------------------------|------------------------------------------------------------------------------------------------|
| 근거법 | 동물보호법 (2024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 예정) | 동물보호법 | 동물복지법 | 동물복지법 | 동물복지및관리에관한법률 |
| 조직명 | 농림축산 식품부 | 연방식품농업부(BMEL) | 환경식품농무부(DEFRA) | 농무부(USDA) | 환경성 |
| 주무부처 주요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정책 총괄 관리 • 종합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 동물보호활동에 대한 지원 • 동물보호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개발, 법률 시행 감독 • 주 정부와의 협력, • 연구 및 교육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책임자(소유자) 의무에 관한 규정(Regulation), 실무규정(Code of practice) 마련 및 시행 • 타 부처 동물복지 관련 정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법(판매자, 연구기관 등의 동물 수송, 관리에 관한 내용) 집행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및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기본지침 마련, 반려동물 등록관련 업무 수행 |
| 조직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BVL) | 동식물건강청(APHA) 동물의약품국(VMD) | 동식물검역국 (APHIS) | - |
| 주무부처 산하기관 주요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제 운영 •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 •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동물의약품의 감독 기능 등 • 위반 시 권고 및 보고 •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HA) 동물복지 기준 준수 감독 • 지방정부 동물복지 정책 집행에 따른 필요 법적 자문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법 집행 및 집행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템 운영 관리 • 동물복지 OIE 정책 동향 파악 및 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 • 동물보호법령 제·개정 지원, 동물복지 교육·홍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MD) 동물의약품 관련 감독 기능 등 담당 | | |
| 지방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 동물 등록, 동물 구조 및 보호 •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과 반려견보호규정 상의 정책 집행 및 자체 복지 정책 수립·시행, • 반려견세 운영 • 비영리기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관련 내용 집행, • 동물복지법 제30조 위반에 따른 범죄 발생 시 기소권 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주 법 제정을 통한 동물복지 제도 규정 및 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도부현) 동물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기준 미준수 시 지도 및 권고 조치, 동물복지 관련 시설 운영 등 |
| 비영리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협력을 통한 복지 증진 활동 전개(캠페인, 교육, 공동연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 구축 •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공유, • 복지 증진 활동(보호소 운영 등) 전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증진 활동 전개, • 동물복지조사관 제도 운영(RSPCA), • 동물학대 발생 시 사적기소제도를 활용한 기소권 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증진활동 전개, 정부기관과의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인 동물복지 증진활동 전개 |
| 기타 민간영역 | | - | DEFRA의 승인하에 마이크로칩 이식에 따른 데이터 운영 관리 | - | - |

<표 9> 우리나라와 주요국 동물복지정책 조직 및 기능 비교

○ 그러나 주요국 간에도 기관의 구성, 산하기관의 역할,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와 독일, 영국과 미국은 모두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동물복지 정책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성격에서 다소 차이를 보임

○ 첫째, 주무부처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

— 독일의 BMEL의 경우 8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국은 식품안전과 동물건강을 담당하는 3국이며, 3국은 다시 식품안전공급망을 통한 건강,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하위부서31과 동물건강,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하위부서 32로 구분됨

— 영국의 DEFRA는 담당 정무차관이 생물안전, 식물 건강, 동물건강, 동물복지 등의 내용을 총괄하여 책임지며, 관련 책임운영기관인 VMD와 APHA 관련 내용을 관장함

— 또한 사무차관하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수의심의관(국장급, Chief Veterinary Officer) 또한 동물건강과 복지 정책 수립에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도 동물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 인수 감염에 대한 통제 및 근절에 관한 제언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이와 같은 조직 구조는 영국과 독일 모두 동물복지와 동물건강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토대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식품안전과 식물건강을 포괄하여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지향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달리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내 동물복지정책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역 등을 비롯한 동물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기능은 환경성에 동물건강과 관련한 수의관련 기능은 농림수산성에 있으며, 환경성의 동물복지 기능은 전담조직 없이 자연환경국 내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둘째, 독일과 영국은 주무부처 소속기관 역할에서 차이를 보임

— 독일의 BMEL 소속 행정청인 BVL은 동물제품(사료)와 동물의약품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며, 이는 영국의 DEFRA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VMD와 그 성격이 유사함

— 그 외의 정책 집행 다수를 주 정부에서 집행하는 독일과 달리 영국은 동물복지를

위한 감독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할 책임운영기관인 APHA를 두고 있으며, APHA는 DEFRA의 동물복지 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기능 및 정책연구기관으로의 역할, 지방정부의 동물복지 정책 집행에 따른 법적 자문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PHA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연구 기능, 지방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능 등의 기능은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영국에서는 민간 영역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등록 데이터의 관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셋째, 정책적 기능에서 미국은 펫보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펫보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이에 대한 법제도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펫보험의 법제도 마련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펫보험이 갖는 다양한 한계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함

—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펫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등 보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감독권한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서 펫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넷째, 해외 주요국의 경우 지방정부와 비영리기관 간의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을 통한 동물복지 정책 집행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독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양질의 동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의 동물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선진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 또한 비영리기관에서 구축한 동물 등록 데이터를 지방정부 및 경찰과 자격있는 수의사들이 함께 공유하여 유기된 동물을 지원하고 있음

— 영국은 비영리기관과 협력하여 동물복지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실효적인 동물복지가 가능한 수준의 행정력을 부여하여 동물복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영미법 체계의 민간기소제도를 활용하여 기소 건수를 확대하여 법 위반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과 위반자와 동물의 신속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소의 운영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민간 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음
- 비영리기관의 동물보호소 운영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과 기업의 기부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시설개선, 의료비 등)하여 지원한 예산의 재량적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

○ 다섯째, 필요시 민간에 정책 집행을 위탁함

- 영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마이크로칩 등록에 대한 규정(Regulation)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서 반려동물과 반려묘의 등록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축된 데이터의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처리함
- 이러한 민간 위탁은 행정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강점이 되지만, 양육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안의 취약성이 지적됨
- 영국은 이를 이러한 개인정보 문제를 해소하고자 DEFRA의 인증절차를 통해 민간 조직을 선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함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데이터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분석 내용에 기반한 조직·기능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첫째, 동물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실 단위 조직 신설과 동물보건정책관 및 동물복지정책관 등의 하부조직 구성

- 영국은 동물건강의 관점에서 기능을 총괄하고 동물복지가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구성하고 있음
- 독일 또한 동물건강과 동물복지를 하나의 상위 조직 아래 포함하여 통일적인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함
- 이러한 조직의 구성은 인간 - 동물 -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의 동물 삶의 질 제

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 방안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전담조직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거나 방역, 검역, 위생, 건강, 웰니스를 비롯한 동물복지와 관련된 공공수의업무(Public Veterinary Service)가 여전히 부처 내에 흩어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동물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실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그 아래 동물보건정책관과 동물복지정책관 등의 하부조직을 두어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둘째,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기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함

- 앞서 분석내용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복지과 구성원의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축산 영역에 기능이 치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는 총괄 인력 1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축산뿐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된 정책연구 기능, 지방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능 등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기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동물복지 강화 방안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수의법의학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후 부검을 통한 동물 학대 판단 절차를 마련하고자 계획을 수립함
- 이러한 소속기관의 기능 보강은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되나 이후에는 복지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통한 정책연구 기능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됨

○ 셋째, 지방정부가 동물복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대륙법체계의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상에 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인 정책 집행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지방정부의 조례 또한 맹견관리,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업무 경비지원, 협력체계 구축,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강제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된 독일에서도 제도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소권을 법률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학대 감시 기능의 강화 또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동물보호감시원 제도, 명예동물보안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방 수준에서 동물복지 목적의 목적세 마련을 논의해야 함

- 지방정부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등장하고 있음
-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원인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인의 70%는 비반려인의 적대적 행동 때문에, 비반려인의 70%는 반려동물의 위생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인식함
- 독일의 경우 지방세, 목적세 형식의 반려견세를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반려동물 복지정책 집행에 활용하고 있는데, 배설문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비용, 반려견 관련 시설 운영비용 충당 등의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반려견세는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감 고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목적세의 형식으로 운영되기에 조세저항이 낮을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반려견세의 운영방식, 세율의 적정성, 반려동물의 범위 등을 정의하는데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비영리단체, 기타 민간영역과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함
- 이러한 협력사업의 추진은 공공영역의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추진의 효과성

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내용을 살펴보면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의 개최, 공익광고 제작과 같은 교육·홍보사업 위탁과 유실·유기 동물 보호,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집행력 제고 등을 위한 협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 영국의 경우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해 동물복지조사관 제도를 마련하고 조사관 선발, 교육, 운영을 RSPCA에서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음
- 이러한 선발, 교육, 운영이 가능한 것은 동물복지조사관의 집행 권한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임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도 관련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IV. 결론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전담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및 동물복지 전담 조직과 기능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고 다음의 차이를 확인함
 - 첫째,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조직 구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함
 - 둘째, 주무부처의 소속기관의 기능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을 분석함
 - 셋째, 미국의 일부 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펫 보험 정책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넷째, 지방정부와 비영리기관의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 내용을 조사하고 이러한 협력 구축방식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협력구축 현황과 비교하였음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과 기능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조직 개편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동물건강을 총괄하는 실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고 그 아래 동물복지와 동물 건강 등의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하부조직을 둠으로써 인간-동물-환경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제언함
 - 소속 기관의 기능 보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복지 기능이 축산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주무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기능과 지방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함
 - 지방정부의 동물복지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의 마련: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상 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소 과정에서의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 학대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함

— 지방 수준에서의 목적세 마련 논의: 반려동물의 양육에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방세를 마련하여 동물 복지 정책 집행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함

— 비영리단체 및 민간 영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영국의 동물복지조사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비영리단체 및 민간 영역의 집행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제언함

○ 이러한 결과는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실증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 예상하며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 다만, 본 연구의 제한된 기간과 연구인력으로 인해 문헌검토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조직과 기능에 집중하고자 행정학적 배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이후에는 동물복지, 동물보건, 행정학과 정책학적 전문성을 확보한 융복합적 연구인력을 구성하고 주요 해외 정책 추진 체계 및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한 해외 방문 등의 방식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참고문헌>

- 김원각. (2023). 펫보험에 관한 미국 보험법의 입법 동향에 대한 연구. 금융법연구, 20(2), 271-309
- 송혜진. (2019). 주요국 소비자법제 연구Ⅱ - 독일 소비자법제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 이진홍·박상진. (2020). 동물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 571-595.
- 지방의회발전연구소. (1998). 외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홈페이지
- 벨류파인더 인덱스보고서, 2023년 5월 31일자 보고서. "글로벌 국간 펫 산업분석 보고서" (https://static2.einfomax.co.kr/imboard/infolive/20230711_090543_0.7112844714514597.pdf)
- 야노경제연구소, 2024년 7월 5일자 보고서. "ペットビジネスに関する調査を実施 (2024年)" (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3568)
- Auri건축공간연구소, 2023년 11월 1일자 브리핑. "국내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과 이슈" (https://www.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3000000&publication_type=brief&publication_id=1991)
- Kati농식품수출정보, 2024년 5월 13일자 리포트. "[일본] 확대되는 펫푸드시장과 최신 트렌드"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103&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년 5월 7일 리포트. "[미국] 펫푸드 시장동향"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061)
- JETRO, 2022년 9월 16일 리포트. "ペット市場・産業の成長、日本企業のビジネスチャンスはどこに? (韓ࣝ)"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2/5e2ef9be677ac34c.html>)
- APHA. (2022). 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0 to 2021
- Market Analysis Report, 2024년 3월 보고서. "Germany Pet Insurance Market Trends"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germany-pet-insurance-market-report>)
- Mordor Intelligence, 2024년 보고서. "영국 애완동물 간식 시장 규모 및 점유율 분석 - 2029년까지 성장 추세 및 예측" (<https://www.mordorintelligence.kr/industry-reports/uk-pet-treats-market/market-trends>)
- Mordor Intelligence, 2024년 보고서. "미국 반려동물 산업 규모 및 점유율 분석 - 성장 동향 및 예측(2024-2029) Source: <https://www.mordorintelligence.kr/industry-reports/united-states-pet-market>"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united-states-pet-market>)
- Modor Intelligence, 2024년 보고서. "Größe und Anteilsanalyse des deutschen Marktes für Tiernahrung – Wachstumstrends und Prognosen bis 2029 Source: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de/industry-reports/germany-pet-food-market>"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de/industry-reports/germany-pet-food-market>)
- Statista, 2024년 4월 보고서. "Umsatz mit Heimtierbedarf im Online- und stationärem Handel in Deutschland in den Jahren 2006 bis 2023"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61958/umfrage/marktvolumen-fuer-heimtierbedarf-heimtierbedarf-in-deutschland/>)
- RSPCA, 2023년 보고서. "The Animal Kindness Index 2023" (<https://www.rspca.org.uk/whatwedo/latest/kindessindex2023/petowners>)

경인방송, 2024년 6월 11일자 기사. "[동물등록제 10년②] 유럽·미국·일본 등 해외 동물유기 처벌 '강력'"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90352>)

경인방송, 2024년 6월 11일자 신문기사. "[동물등록제 10년②] 유럽·미국·일본 등 해외 동물유기 처벌 '강력'"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90352>)

경인일보, 2024년 2월 28일자 신문기사. "입양 안 되면 다시 버려지는 것... 견(犬)생의 시간은 짧디짧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228020592550>)

경주신문, 2024년 3월 7일자 신문기사. "반려동물 키우기가 매우 까다로운 나라, 일본의 반려동물 문화" (<http://m.gjnnews.com/view.php?idx=79126>)

경주신문, 2023년 12월 21일자 신문기사. "영국의 반려견 문화와 대표적 토종개" (<http://m.gjnnews.com/view.php?idx=78447>)

경주신문, 2024년 1월 4일자 신문기사. "반려견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반려견 문화와 반려견" (<http://m.gjnnews.com/view.php?idx=78577>)

국민일보, 2021년 2월 7일자 신문기사. "개도 세금내고 복지 누린다...독일의 반려견 제도 [개st상식]"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08524>)

베이비타임즈, 2022년 8월 9일자 신문기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https://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34>)

울산매일UTV, 2024년 7월 28일자 신문기사. "특집'한국vs독일'반려문화입양시스템부터 다르다"(<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976>)

주간동아, 2024년 4월 23일자 신문기사. "동물등록 갱신제, 한국도 이제 도입 고민할 시점" (<https://weekly.donga.com/society/article/all/11/4890367/1>)

한국반려동물신문, 2022년 6월 16일자 신문기사. "[2022펫코노미시대를 넘어⑥]155조육박, '복미'반려시장, '대한민국반려동물산업미래지침서'"(<https://www.pet-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

한국반려동물신문, 2023년 4월 10일자 신문기사. "초고령사회 日, 반려동물 양육인구 감소" (<https://www.pet-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44>)

한국반려동물신문, 2024년 3월 6일자 신문기사. "(시장특집) 2023년 글로벌 반려동물 사료시장 트렌드를 말하다" (<https://www.pet-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79>)

한국애견신문, 2023년 12월 4일자 신문기사. "日, 반려동물 고령화 시대로 반려동물용 이색 서비스 '인기'" (<http://www.koreadognews.co.kr/news/view.php?no=7394>)

한국펫산업연합회, 2023년 11월 24일자 신문기사. "영국 반려산업 주요 시장 트렌드" (http://kpira.or.kr/sub/sub05_04.php?boardid=news&mode=view&idx=93&sk=&sw=&offset=4&category=)

EBS뉴스, 2021년 9월 21일자 기사. "반려동물의 천국'독일'...동물보호소는 어떤 모습일까?"(<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455115&memberNo=10234477&vType=VERTICAL>)

1코노피뉴스, 2023년 9월 19일자 신문기사. " [펫코노미] 해외에는 있고 국내에는 없는 동물보호법은? "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55>)

CBSNEWS, 2024년 1월 9일자 신문기사. "Animalsheltersareoverwhelmedbyabandoneddogs.Here'swhy."(<https://www.cbsnews.com/news/animal-shelters-overwhelmed-by-abandoned-dogs/>)

Kotra, 2023년 11월 1일자 기사. "일본 반려동물 시장, 키워드는 '삶의 질'"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

NttSn=207060)

Metro, 2024년 3월 13일 자 신문기사. "韓펫보험가입률 1.4%, 日 10분의 1 수준"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312500632>)

News펫, 2023년 7월 1일 자 신문기사. "영국의 개 사육 환경은 어떨까..." 동물복지 철저" (<https://www.newsp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1>)

All About Berlin, 2024년 8월 7일 자 기사. "Types of insurance in Germany" (<https://allaboutberlin.com/guides/insurance>)

bussgeldkatalog, 2024년 8월 23일 자 기사. "Was Besitzer zur Maulkorbpflicht für Hunde wissen müssen" (<https://www.bussgeldkatalog.org/maulkorbpflicht/>)

bussgeldkatalog, 2024년 8월 21일 자 기사. "Mietrecht & Haustiere: Ist Tierhaltung in der Mietwohnung erlaubt?" (<https://www.bussgeldkatalog.org/mietrecht-haustiere/>)

CHECK24, 2023년 8월 1일 자 기사. "Umfrage zu Tierversicherungen - viele Tierhalter*innen ohne ausreichenden Schutz" (<https://www.check24.de/tierversicherung/umfrage-zu-tierversicherungen/>)

DA Direkt, 2023년 9월 1일 자 기사. "Haustiere in Deutschland: neue große Studie von DA Direkt" (<https://www.dadirekt.de/hundekrankenversicherung/ratgeber/haustiere-deutschland>)

Deutschlandfunk, 2024년 2월 27일 자 기사. "Überfüllt und unterfinanziert" (<https://www.deutschlandfunk.de/haustier-tierheim-hund-katze-abgeben-100.html>)

F6S, 2024년 10월 26일 자 기사. "10 top Pet Tech companies and startups in Germany in September 2024" (<https://www.f6s.com/companies/pet-tech/germany/co>)

IVH, 2024년 4월 16일 자 기사. "Der Deutsche Heimtiermarkt 2023"

Mein-haustier, 2024년 3월 1일 자 기사. "Was kostet ein Haustier?" (<https://www.mein-haustier.de/magazin/kosten-haustier/>)

PeTA, 2023년 12월 1일 자 기사. "Tiere adoptieren: Alle wichtigen Infos zur Adoption von Tieren" (<https://www.peta.de/themen/tiere-adoptieren/>)

Statista, 2023년 8월 7일 자 기사. "Katzen haben die Schnauze vorn" (<https://de.statista.com/infografik/18926/die-haeufigsten-haustiere-in-deutschland/>)

TRADE, 2024년 9월 8일 자 기사. "Germany Pet Industry" (<https://www.trade.gov/market-intelligence/germany-pet-industry>)

ABI, 2024년 5월 25일 자 기사. "Average Cost of Pet Insurance UK 2024" (<https://www.nimblefins.co.uk/average-cost-pet-insurance>)

Dogstet, 2024년 8월 24일 자 기사. "15 Surprising UK Pet Spending Statistics to Know in 2024" (<https://www.dogster.com/lifestyle/pet-spending-statistics-uk>)

Dogstet, 2024년 7월 17일 자 기사 "16 Pet Adoption Statistics in the UK (Updated in 2024)" (<https://www.dogster.com/statistics/pet-adoption-statistics-uk>)

DOGGO, 2023년 2월 21일 자 기사. "Did you know 21 healthy stray dogs are euthanized every day in the UK?" (<https://www.citydoggo.com/blogs/news/the-uk-abandoned-pet-crisis?srsId=AfmBOorLuYoExKFPi5h4LH7PmDISOq7dev4cYTYzuHdIngTs-A8EikR->)

Forbes, 2023년 1월 26일 자 신문기사. "How To Adopt A Dog & Get It Insured" (<https://www.forbes.com>)

/uk/advisor/pet-insurance/how-to-adopt-a-dog-and-get-it-insured/)

INDEPENDENT, 2022년 11월 7일자 신문기사. "'Millions of dogs and cats could be put down or abandoned' due to cost of living crisis"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pet-dogs-cats-put-down-bill-cost-b2218111.html>)

MauyPets, 2023년 12월 4일자 기사. "How much is a vet visit in the UK?" (<https://manypets.com/uk/articles/vet-visit-cost/>)

Pangovrt, 2024년 10월 30일자 신문기사. "14 UK Animal Shelter Statistics & Facts to Know In 2024: Benefits, Facts & More" (<https://pangovet.com/statistics/animal-shelter-statistics-uk/>)

UK Pet Food, 2024년 8월 24일자 신문기사. "How Many Dogs & Cats Are in the UK? 2024 Pet Ownership Statistics UK" (<https://worldanimalfoundation.org/advocate/pet-ownership-statistics-uk/>)

Wales Online, 2024년 4월 24일자 신문기사. "Nearly half of UK pets have their own room to relax in, study finds" (<https://www.walesonline.co.uk/news/uk-news/dogs-cats-interior-design-homes-29045507>)

Forbes ADVISOR, 2024년 1월 25일자 신문기사. "Pet Ownership Statistics 2024" (<https://www.forbes.com/advisor/pet-insurance/pet-ownership-statistics/>)

Forbes ADVISOR, 2024년 1월 23일자 신문기사. "Pet Adoption Statistics 2024" (<https://www.forbes.com/advisor/pet-insurance/pet-adoption-statistics/>)

Kotra, 2023년 10월 27일 기사. "반려동물의 나라 美, 성장하는 '펫 보험' 시장"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7211)

Market Watch, 2024년 9월 30일자 신문기사. "Pet Ownership Statistics and Facts" (<https://www.marketwatch.com/guides/pet-insurance/pet-ownership-statistics/>)

Money, 2024년 1월 17일자 기사. "How to Adopt a Dog" (<https://money.com/how-to-adopt-a-dog/>)

Newsbytes, 2024년 1월 11일자 신문기사. "Americans are abandoning pets! Here's the sad reality behind it" (<https://www.newsbytesapp.com/news/world/why-americans-are-ditching-their-pets/story>)

wikihow, 2024년 7월 8일 기사. "How to Register Your Dog" (<https://www.wikihow.com/Register-Your-Dog>)

Yahoo!finance, 2024년 2월 26일자 신문기사. "Global Pet Food Processing Market to Touch Valuation of USD 8,007.3 Million by 2032 | Dry Pet Food Processing Generate More Than 72% Revenue But Grappling with Challenges says Astute Analytica" (<https://finance.yahoo.com/news/global-pet-food-processing-market-to-touch-valuation-of-usd-80073-million-by-2032-dry-pet-food-processing-generate-more-than-72-revenue-but-grappling-with-challenges-says-astute-analytica-144500022.html>)

Yahoo!finance, 2024년 2월 26일자 신문기사. "1 Magnificent S&P 500 Dividend Stock Down 23% to Buy Right Now" (<https://finance.yahoo.com/news/1-magnificent-p-500-dividend-144500022.html>)

Mordor Intelligence, 2024년 기준 보고서. "일본 펫푸드 시장규모 Source: <https://www.mordorintelligence.kr/industry-reports/japan-pet-food-market/market-size>" (<https://www.mordorintelligence.kr/industry-reports/japan-pet-food-market/market-size>)

Peace Wanko Japan, 2023년 11월 9일자 신문기사. "殺処分が多い国ランキングとは？日本の現状や犬を救う方法を解説！" (<https://wanko.peace-winds.org/journal/17543>)

Qrasippo, 2024년 5월 10일자 신문기사. "ペットの殺処分の現状！日本の制度の問題点は？対策法は？" (<https://petand.co.jp/qrasippo/4650/>)

Sippo, 2024년 6월 17일자 신문기사. "日本で飼い主のいない犬や猫は約228万匹 世界規模の調査で明らかに" (<https://sippo.asahi.com/article/15302713>)

Statista, 2023년 11월 7일자 보고서. "Distribution of pet ownership in Japan as of May 2023, by specie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41746/japan-pet-ownership-distribution-by-species/>)

Tsunagu Local, 2021년 1월 21일자 신문기사. "일본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법" (<https://www.tsunagulocal.com/ko/48116/>)

マイナビニュース, 2024년 4월 25일자 신문기사. "「犬派」「猫派」多いのはどっち? 300人調査の結果は" (<https://news.mynavi.jp/article/20240425-2934151/>)

大阪府, 2024년 5월 25일자 기준. "動物取扱業を行う遵守基準" (<https://www.pref.osaka.lg.jp/o120200/daicenter/daicenter/jyunshukijyun.html>)

東京都保健#21307;療局, 2024년 기준. "飼養管理基準について"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douso/kaisei/shiyou_kanri_kijun.html)

마이니치, 2024년 1월 14일자 기준 신문기사. "No. of new pet dogs, cats in Japan falls; no COVID restrictions may be factor"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40111/p2a/00m/0li/025000c>)

小さなお葬式, 2024년 8월 23일자 신문기사. "今どきのペットの葬儀事情とその問題点" (<https://www.osohshiki.jp/column/article/023/>)

株式会社#20250;社, 2024년 5월 14일자 신문기사. "ペット保#38522; (犬#12539;猫) の料金相場と選び方、安くする方法【各社比較】" (<https://context-japan.jp/ryoukin/pet-hoken-17409.html>)

Erstmals mehr als sieben Milliarden Euro Umsatz – Heimtiere in fast jedem zweiten Haushalt" (<https://www.ivh-online.de/der-verband/daten-fakten/der-deutsche-heimtiermarkt.html>)

Abbey Street, 2024년 기준. "Adoption fees" (<https://www.rspcaderby.org.uk/find-a-pet/adoption-fees>)

ASDAmoney, 2024년 기준. "Dog Cremation Costs" (<https://money.asda.com/insurance/pet-insurance/dog-cremation-cost/>)

Dunham Lawn, 2024년 기준. "Pet funeral prices" (<https://petfunerals.trafford.gov.uk/Prices.aspx>)

GOV.UK, 2024년 기준. "Get your dog or cat microchipped" (<https://www.gov.uk/get-your-dog-cat-microchipped>)

CITY OF LITTLE ROCK, 2024년 기준. "Animal Services" (<https://www.littlerock.gov/city-administration/city-departments/housing-and-neighborhood/animal-services/>)

Titan, 2024년 기준. "What Is The Cost Of A Typical Pet Burial? " (<https://titancasket.com/blogs/funeral-guides-and-more/pet-burials-cost-and-other-factors-to-consider>)" (<https://finance.yahoo.com/news/global-pet-food-processing-market-103000704.html?.tsrc=fin-srch>)
